



한-미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KOREA-U.S.A Collaborative Research IP Tool-Kit)

2015.10.14.
법무법인 다래

목 차

I.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1
II.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설명	5
III. 비밀유지 계약서 설명	99
IV.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125
V. 비밀유지 계약서(NDA)	149
VI. 국제공동연구 관련 용어 해설서	157
VII.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크리스트	177

1. 국제공동연구 가이드라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도 어느 한 기업, 학교, 연구소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따라서 복수의 기업, 학교, 연구소들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프로젝트가 점차 보편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히 한국의 기업, 학교, 연구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자 기술 선도국인 미국의 기업, 학교, 연구소들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공동연구는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여 연구결과를 산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연구결과가 누구의 소유이고, 누가 어떤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결과 보호를 위해 누가 어떤 의무를 부담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특허법 및 관련 지식재산권 법률에서 정한 공동 권리에 대한 규정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즉, 한국의 특허법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한 특허의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스스로 실시할 수는 있으나, 그 외에 제3자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특허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반면 미국의 특허법에서는 공유자가 공유특허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든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경쟁자에게도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지분을 양도할 수도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공유특허의 경우 공유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해야 하나, 미국의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은 한국에 비용을 들여 특허를 출원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다. 미국 시장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굳이 작은 한국 시장에서 해당 기술을 사용할 필요가 없고, 특허가 침해당한다고 해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많이 받기도 어려우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특허 출원이기 때문에 출원 비용이 적지 않고, 제한된 특허출원비용을 투자하기에는 미국, 유럽, 중국 등과 비교하여 우선순위도 밀리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한국에서의 특허 출원에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미국의 기업, 학교, 연구소 등이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를 한국에서 출원하는 것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기업, 학교, 연구소만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이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경우에, 그 기초가 되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의 내용을 협의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법률적 문제가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비전문가들인 실무 연구자들끼리 서로 협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서명하기 때문에 추후 위와 같은 문제를 포함한 여러 분쟁들이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은 전문가의 부재, 전문 지식이나 경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영문으로 작성되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의 작성을 미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에 일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미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은 그렇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계약서의 초안을 면밀히 검토할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런 수정도 하지 않은 채 전달 받은 초안 그대로 서명하는 경우가 흔하다. 연구비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연구개발계약의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성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다. 그러한 계약서를 미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이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에게 불리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도 수긍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서 샘플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서 초안을 제공받을 위험을 줄이고, 한국과 미국의 관련 법률에 위반되지 않으면서도, 한국과 미국의 당사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계약의 최종안에 이를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본 가이드라인은 위와 같이 한국과 미국의 당사자들이 모두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계약서 샘플을 제공하고, 그러한 계약서 샘플의 내용을 법률 비전문가들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하고,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 시 필요한 비밀유지계약서 샘플과 계약 협의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학교, 기업, 연구소 등의 연구 실무자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도움이 되도록 작성되었다.

아래에서는 한미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 샘플을 각 조항 별로 설명하였고, 본 계약서 샘플, 비밀유지계약서 샘플을 별첨으로 추가하였다.

II.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설명

1. 당사자 (Parties)

Thi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dated as of [September 30, 2015]¹⁾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ffective Date”),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Korean ABC Institute]

*12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138-050*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I”)

and

[American XYZ University]

*456 Main Street
New York City, NY 12345, US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XU”).

KAI and AXU wi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본 공동연구개발계약(이하 “계약”)은 2015년 9월 30일자 (이하 “효력발생일”)로 한국 ABC 연구원 (이하 “KAI”)와 미국 XYZ 대학교 (이하 “AXU”)간에 체결되었다.

KAI 및 AXU를 이하 각자 “당사자”, 합쳐서 “양 당사자들”이라고 한다.

한국과 미국 간의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이하 “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 정해야 할 것은 해당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이다. 보통 한국 측 당사자(기업, 학교, 연구원 등)와 미국 측 당사자가 각각 하나씩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다자간 협력이 없이는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1)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은 대괄호 []로 표시한 후 밑줄과 기울임꼴(italic font)로 구별하였으며, 이하 같음.

3개 이상의 다수 당사자가 하나의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즉, 1개의 국가에서 2개 이상의 기업, 학교, 연구원 등이 참여하거나, 아예 3개 이상의 국가의 기업, 학교, 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개발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계약의 당사자가 둘일 경우에는 공동연구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 사용 등에 주 의하여 비교적 간단한 형식의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계약 당사자가 셋 이상의 다수가 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의 소유, 사용의 내용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그 외의 부수적인 문제들까지 협의하여 계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참가하는 당사자가 많은 경우 해당 연구를 총괄하여 감독하고 관리할 기구(organization)를 두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특성상 당사자 간에는 거리, 시차, 언어, 법제도 등의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렵고, 문제를 논의할 공통의 시간과 장소를 찾기도 어려우며, 문제를 논의한다 해도 문제 해결을 위해 작은 결정 하나 내리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나 프로젝트 관리기구(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등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규정도 계약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수의 당사자가 존재하면 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계약의 탈퇴도 논의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둘일 경우 어느 한 당사자가 계약에서 빠지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만일 여러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만 계약에서 빠지고자 한다면, 굳이 계약을 전부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사자만 계약에서 빠지고 나머지 당사자들은 여전히 계약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약에서 탈퇴하는 당사자가 개발하던 연구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그 당사자가 개발한 연구결과에 대한 소유나 사용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제공한 기반 기술들의 사용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등 여러 복잡한 문제들을 추가로 논의하고 합의하여 계약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설명하되,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자가 둘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 샘플(별첨 1 참조)을 작성하였으며, 이하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조항 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하도록 한다.

2. 전문 (Whereas)

WHEREAS

KAI is a non-profit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areas of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AXU is a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e which is university for education and research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wish to collaborate on a research project entitled [“Artificial Intelligent Unmanned Aviation Vehicle”] which is of mutual interest and benefit to the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earch”), and now desire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f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conducting the Research.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contained herein and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전문

KAI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연구소로서, 전자 및 통신 분야의 연구 개발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AXU는 미국 뉴욕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 연구를 위한 대학교이다.

본 계약의 양 당사자들은 상호 관심과 이익이 되는 “인공지능 무인항공기”라 불리는 연구 프로젝트(이하 “연구”)에 협력하고자 하며, 연구 수행 협력과 협조를 위해 본 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

이에 양 당사자들은, 여기 포함된 상호 의사표시, 보증, 약정 및 기타 주고받은 다른 호의적이고 가치 있는 약속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본 계약서 샘플은 한국의 어느 연구소(KAI)와 미국의 어느 대학교(AXU)를 당사자로 가정하였고, 연구개발 내용도 ‘인공지능 무인항공기(Artificial Intelligent Unmanned Aviation Vehicle)’라고 가정하여 작성되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본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도록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국제공동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각자의 사정에 맞게 위 내용을 쉽게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계약서 전문에서는 계약의 각 당사자가 어떠한 곳인지를 간략히 설명하는데, 이는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도 있으나, 계약에서 해당 당사자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를 설명함으로써, 계약서 상에 기재된 합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에 도움을 얻기 위함이기도 하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계약서 제1조에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국제공동연구 개발계약에서는 ‘계약의 목적’을 전문에 기재함으로써, 계약서 상에 기재된 문언 해석 시 참고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도록 하고 있다²⁾. 따라서 계약서 전문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격, 계약의 목적을 기재하는 것을 그저 요식행위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서 기재된 문언의 해석 시 참고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하여 너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다. 당사자 설명은 2~3줄 정도, 계약의 목적도 5줄 내외로 작성하면 적절하다고 보인다. 연구개발 내용도 보통 별지에 자세히 규정하기 때문에 계약의 목적에서 간단하게 언급하는 정도면 될 것이다.

2) 영문계약의 일반적 형태이기도 하다.

3. 정의 (Definitions)

1. DEFINITIONS

Words or expressions used in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meanings set forth below unless it is expressly stated to the contrary or any other meaning is apparent in the context in which such words or expressions are used.

1. 정의

본 계약에 사용되는 단어나 표현은, 명시적으로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또는 문맥상 다른 의미가 명백하지 않는 한, 아래 규정되는 의미를 가진다.

실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들을 검토하면, 의외로 정의(definitions) 조항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물론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이 별도의 정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일반적이라거나, 아니면 본문에서 별도로 정의되고 있어서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해당 계약에서만 쓰이는 생소한 용어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사용되거나, 본문에서 각 조항의 제목(heading)을 본문에서 특정 용어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계약서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계약서의 경우,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서 해석 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양 당사자의 해석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법원에 제소를 하거나 중재원에 중재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공방이 장기화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가능하면 처음에 계약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라 해당 계약에서만 쓰이는 특정 용어의 경우에는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법원이나 중재원에서 판사나 중재인이 그 특정 용어의 의미를 정확

히 이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약서 샘플에서는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문맥상 당연한 의미 외에는 아래 규정하는 정의들을 사용하게 된다. 만일 계약서에서 자주 쓰이거나, 의미가 분명하지 않거나, 계약상 중요한 단어 및 표현은 여기서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한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각 계약에 맞게 추가, 수정, 삭제 가능하다.

정의조항에서 특정된 용어가 본문 중에 사용될 때에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사용함으로써 그 용어가 정의조항에 의하여 별도로 정의되어 있음을 표시할 수 있다.

1.1 “Intellectual Property” or “IP” means any discovery, invention, formulation, know-how, method, technological development, enhancement, modification, improvement, work of authorship, computer softwa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ource code and executable code) and documentation thereof, data or collection of data, whether patentable or not, or susceptible to copyright or any other form of legal protection.

1.1 “지식재산” 또는 “IP”란 발견, 발명, 공식, 디자인, 노하우, 방법, 기술개발, 개량, 수정, 향상, 저작, 설계도, 소프트웨어, 이들에 대한 문서,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고 저작권이나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은 공동연구개발 시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 중 하나이므로 가능한 한 명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식재산’이라 하면 특허나 상표와 같이 법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모든 종류의 지식을 통칭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특허나 상표와 같이 등록이 되어 법적 보호를 받는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별도의 법적 등록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발견, 발명, 방법, 노하우,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각종 수정 또는 변경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 정의한다.

1.2 “Background IP” means IP which exists as of the Effective Date, is owned or controlled by a Party hereto, and is not created or invented during a course of the current Work.

1.2 “기반 IP”란 효력 발생일 현재 존재하는 IP로서 일방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고, 현재의 작업 과정 중에 창작되거나 발명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기반 IP(Background IP)”란 공동연구개발 계약 체결 전에 이미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지식재산으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 본 계약에서 특별하게 사용되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의 조항에 포함되어 구체적으로 정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공동연구개발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이를 바탕으로 본 계약에 따른 공동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되고, 최종 연구결과도 각 당사자가 제공한 ‘기반 IP’가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반 IP’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된 연구를 통해 생성된 연구결과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되기 때문에 본 계약에서는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이다.

1.3 “Know-how” means a package of information, which is not generally known or easily accessible, but indispensable for the creation, development, manufacture, distribution, application or testing of a software, service or process.

1.3 “노하우”란 일반적으로 알려지거나 쉽게 접근할 수 없으나 제품, 서비스 또는 공정의 생성, 개발, 제조, 유통, 응용 또는 테스트에 필수적인 정보들을 의미한다.

“노하우(Know-how)”는 특정하기가 어렵다거나 신규성이나 진보성과 같은 요건을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해서 특허나 상표와 같이 법적인 절차에 따라 등록하는 것이 어려운 지식재산, 또는 특허나 상표 등으로 등록은 가능하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등록하지 않는 지식재산 등으로서, 제품의 생산, 개발, 유통, 응용 등 모든 단계에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축적한 지식과 경험을 일컫는다. 예를 들면 특정 실험을 수행하는 방법, 특정 결과물을 산출하는 방법, 특정 재료를 채취하는 방법, 실험이나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 등 제3자는 잘 알지 못하는 지식이나 정보를 말한다.

특히 공동연구결과로서 특허나 상표와 같이 등록할 수 없는 지식재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노하우에 대한 정의는 특히 중요하며, 때로는 노하우의 범위를 노하우의 특성, 구성, 효과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까지 있다.

1.4 “Research Results” means IP which is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1.4 “연구결과”란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되었거나 개발 중인 IP를 의미한다.

“연구결과”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본 계약에서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된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생성된 결과물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는 “기반 IP”와 구분되는 개념으로서 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별도로 필요하다.

1.5 “Research Director” means the person(s), designated by either a Party or the Partie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coordinating and supervising the Research in its entirety under this Agreement.

1.5 “연구책임자”란 어느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에 의해 지정된 자로서, 본 계약에 따라 연구 전체를 수행하고, 조정하며, 감독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연구책임자”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나, 본 계약에서 특별히 사용되는 용어로서 별도의 정의가 필요하다. 즉, 본 계약에서는 본 계약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는 한쪽 당사자를 총괄책임자이면서,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해야 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그 의미를 명확히 정의하여야 한다.

1.6 “Affiliate” means any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ity which,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a Party, is controlled by the Part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the Party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As used in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means possession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ity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1.6 “관계사”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현재, 직간접적으로 일방을 통제하거나 일방의 통제를 받거나 그 일방과 공동으로 통제권을 가지는 회사나 업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통제”란 의결권의 소유나 계약 또는 기타 방법으로 한 기업이나 업체의 경영 및 정책 방향을 지시하거나 지시하도록 할 수 있는 힘을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계사(Affiliate)”는 계약 당사자가 주식을 소유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의사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제3의 사람이나 기업 등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의 자회사나 계열사를 말하며, 특별히 계약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의 효력이 관계사에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나 의무를 관계사에 부여할 수도 없으며, 계약상 주고받은 영업비밀 등도 관계사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계약에서 ‘관계사’는 주로 특정 업무를 위탁하거나 재실시권을 부여한다거나 비밀유지의무 대상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할 때 주로 사용되는데, 만일 계약 본문에서 ‘관계사’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본 조항은 삭제할 수 있다.

1.7 “Third Party” mean any individual, corporation or business entity other than the Parties.

1.7 “제3자”란 양 당사자들을 제외한 다른 개인, 법인, 기업을 의미한다.

“제3자(Third Party)”는 계약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과 단체 등을 말하며, 특별히 다르게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 당사자의 관계사도 제3자에 해당한다.

4. 연구의 구체화 (Implementation of the Research)

2. IMPLEMENTATION OF THE RESEARCH

2.1 Scope

The Parties agree to use reasonable efforts to perform the Research as described in Schedule A (Scope of Research). However, the Parties may add, modify or remove the description, in whole or in part, of the Research and expand or reduce the scope of the Research with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writing.

2. 연구의 구체화

2.1 범위

양 당사자들은 별지 A (연구 범위)에 기재된 바에 따라 합리적 노력을 다 하여 연구를 수행하기로 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들은 상호 서면 동의 하에 연구의 기재 전체 또는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연구의 범위를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연구의 범위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연구범위를 너무 모호하고 추상적으로 정해놓으면, 추후 계약이 종료된 후이나 계약 기간 중에 독자적으로 개발된 결과물까지 공동연구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독자적으로 개발했으나 상대방이 공동연구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공동연구와 관계 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공동소유로 한다거나 수익을 분배한다거나 상대방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동연구의 범위를 계약서 본문에 기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본 조항과 같이 별지(Schedule)³⁾에 구체적인 공동연구 범위를 작성하여 계약서에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별지(Schedule)는 계약의 부속서로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되며, 연구계획서나 지식재산의 범위 등 계약서의 본문에 담기 어려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며, 별지(Schedule)는 필요한 경우 Schedule A, Schedule B, ... 등으로 계속 추가할 수 있다.

2.2 Roles and Responsibilities

The Parties shall undertak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specified in Schedule B (Roles and Responsibilities). However, the Parties may add, modify or remove the roles and/or responsibilities in whole or in part only with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writing.

2.2 역할과 책임

양 당사자들은 별지 B (역할과 책임)에 규정된 역할과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양 당사자들은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역할 및/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공동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각 당사자가 공동연구에서 해야 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일을 관리하고,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담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추후 연구가 계획대로 이행이 안 되었다거나 의무불이행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계약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우므로,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이를 계약서에 첨부하되, 본 조항과 같이 별지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계약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별지의 내용도 본 계약의 일부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3 Permits and Approval

Each Party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promptly obtaining all necessary consents, approvals, permits or authorization from government and/or relevant authorities for the Party to perform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the other Party's assistance or cooper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application or documentation, is required by laws or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such consents, approvals, permits or authorization, the other Party may assist or cooperate with the Party to the reasonable extent upon request.

2.3 허가 및 허락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정부 및/또는 관련 당국의 모든 필요한 동의, 허락, 허가 또는 승인을 즉시 받아야 할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공동신청이나 문서작업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상대방의 지원 또는 협력이 그러한 동의, 허락, 허가 또는 승인 과정에서 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경우에, 그 상대방은 요청 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 당사자를 지원하거나 그 당사자와 협력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내용에 따라 각국 정부, 관계기관, 학교나 연구원 내부 부서 등으로부터 사전에 심의를 받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생명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연구라거나,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연구라거나, 내부적으로 또는 국가적으로 공개나 수출이 제한되는 기술에 관한 연구 등의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각국의 정부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외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데,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한 각종 제안, 신청, 발표,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수행할 책임도 원칙적으로 각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만일 국제공동연구를 시작하기 위한 시간, 인력, 비용을 투입하였으나, 상대방의 책임으로 연구비 지원을 못 받게 되었다거나,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그러한 절차에는 다른 당사자의 동의서 제공이나 신청서 공동 제출 등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협조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대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그러한 요청에 응하도록 함으로써,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부당하게 협조가 거부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제공동연구가 보다 원활하게 시작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외부에서 연구비를 지원받는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원하는 외부기관과 연구비를 지원받는 당사자 간에 별도의 연구비 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에는 각국의 관련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는 편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지원금이 지급될 때 국가연구개발과제에 관한 각종 법규정이 적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외부기관과 주관연구기관 간의 외부 연구비 지원 계약과, 주관연구기관과 외국 상대방 간의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이 2단계로 체결되는 경우에는 두 계약의 내용 중 일부가 서로 상충될 수 있다. 본 계약의 샘플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그러한 2단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두 계약이 상충하면 외부 연구비 지원 계약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는 내용을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본 계약서 샘플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여야 할 것이다.⁴⁾

4) 예를 들면, “In case this Agreement is in conflict with the Funding Agreement, the terms of the latter shall prevail.” (본 계약이 펀딩 계약과 충돌하는 경우 후자의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

5. 공동연구 관리 (Management of the Research)

가. 별도의 운영기구가 필요 없는 경우

(In case of two Parties without management organization)

3. MANAGEMENT OF THE RESEARCH

3.1 General Structure

Each Party shall appoint its own Research Director to conduct and supervise the Research on its en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in Article 2.2. Research Directors of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regularly or irregularly to coordinate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A in Article 2.1.

3. 연구 관리

3.1 일반 구조

각 당사자는 제2.2조의 별지 B에 따라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고 감독할 연구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각 당사자의 연구책임자들은 제2.1조의 별지 A에 따라 연구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서로 의사를 교환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둘인 경우에는 공동연구를 위한 별도의 운영기구를 두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신 각 당사자가 연구책임자를 각각 임명하여 각 당사자가 맡은 연구를 수행 및 관리하도록 하고 각 연구책임자들이 주요 이슈를 논의하여 공동연구를 이끌어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 아니면 전체 공동연구를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는 대표책임자를 양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고 그 대표책임자를 통해 모든 공동연구를 이끌도록 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그러나 국제공동연구개발의 특성상 각 당사자 간에는 거리, 시간, 언어, 법제도 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각 당사자가 각자의 연구책임자를 두어 각 당사자가 맡은 업무를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공동연구 전체의 문제는 연구책임자들이 별도로 논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3.2 Research Directors

Research Directors of th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 a regular and irregular basis in order to do the followings together:

- (i) to exchange and share information of the Research in progress;
- (ii) to discuss and resolve any issues or concerns in conducting the Research;
- (iii) to make a decision on the issues or concerns if necessary for the Research to be continued; and
- (iv) to do other things necessary for further coordination of the Research.

3.2 연구책임자

각 당사자의 연구책임자들은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서로 의사를 교환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책임을 부담한다.

- (i)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유
- (ii) 연구 수행 시 문제나 염려에 대한 논의 및 해결
- (iii)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문제나 염려에 대한 결정
- (iv) 연구의 추가 조정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들

각 연구책임자들은 공동연구에서 각 당사자가 맡은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연구책임자들 간에 해야 할 정보 교류, 이슈 논의, 문제 해결 등의 업무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해야 할 일이 어떤 것인지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할 수 있고, 공동연구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기본적인 업무만 나열하였고, 마지막에 나머지 업무를 포괄하여 두기는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협의하여 연구책임자의 업무를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3.3 Escalation

If Research Directors are not 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issues concerning the Research or this Agreement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the issues are raised by Research Director(s), the issues shall be referred to the president, CEO or other senior management of each Party in an attempt to resolve the issues within [*fourteen (14) days*] from the referral. In the event of failure to resolve the issues at the senior management level, the issues shall be resolved by means of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3.3 상부 회부

연구책임자들이 연구나 본 계약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후 14일 이내에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는 각 당사자의 대표이사, CEO 또는 그 밖의 최고경영진에 회부되고, 회부 후 14일 이내에 해당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진 단계에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실무자인 연구책임자들이 모여서 논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각 당사자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구책임자들 수준에서는 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들이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들이 시간만 허비하도록 방치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각 당사자의 상부로 문제를 회부하여 고위 경영진 수준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절차를 두어야 한다. 이를 보통 “상부 회부 (escalation)”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부 회부 절차를 계약서에 명시하여 둬으로써, 연구책임자들 수준에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그 다음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명시적 절차가 없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없이 지나게 되고, 공동연구계약에서 정해진 연구기

간이 부족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높다. 또한 고위 경영진 수준에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따른 분쟁해결 방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도록 명시하여 신속한 문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나. 별도의 운영기구가 필요한 경우

(In case of two or more Parties with management organization)

3. MANAGEMENT OF THE RESEARCH

3.1 General Structure

(a) Each Party shall appoint its own Research Director to conduct and supervise the Research on its en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in Article 2.2.

(b) The Parties shall set up and run the Steering Committee for managing all matters and issues that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performance of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Research Director of each Party shall be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participate in the meetings of the Steering Committee on a regularly or irregularly basis by means of face-to-face meeting, tele-conference, video-conference or the like.

3. 연구 관리

3.1 일반 구조

(a) 각 당사자는 제2.2조의 별지 B에 따라 각자의 연구를 수행하고 감독할 연구책임자를 임명해야 한다.

(b) 양 당사자들은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으로부터 또는 연구수행과 관련된 모든 사안과 문제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각 당사자의 연구책임자는 운영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대면 회의, 전화 회의, 화상 회의 또는 그와 유사한 수단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많은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별도의 운영기구를 설치하여 공동연구 전체를 관리하는 경우가 많다. 명칭은 운영위원회(steering committee)나 프로젝트 관리조직(project management organization) 등 다양하다.

운영위원회는 보통 각 당사자의 연구책임자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게 되며, 구체적인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은 계약서 본문에서 규정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하더라도, 운영위원회가

국제공동연구의 전반적인 수행, 관리, 감독을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사항은 본 계약서 본문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고(본 계약서에는 연구책임자를 예시하고 있으며, 각 당사자의 대표나 연구관리부서의 책임자를 추가할 수 있다), 얼마나 자주 회의가 열리며, 회의 방식은 어떻게 되고, 의결은 어떻게 하는지 등은 간단하게나마 계약서 본문에서 명시하는 것이 좋다.

특히 국제공동연구의 특성 상 운영위원회가 대면 회의 방식으로는 자주 개최되기 어렵기 때문에 전화회의, 화상회의, 이메일 회람 등 다양한 방법을 허용하는 것이 좋으며, 회의 개최도 연구 수행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각종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비정기적으로 신속하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두는 것이 좋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운영위원회 구성, 업무, 의결에 관하여 기본적인 내용을 기재하였으며, 만일 운영위원회에 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면,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본 계약서 본문에 추가하거나 별도로 운영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3.2 Steering Committee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and obliged to:

- (i) exchange and share information of the Research in progress;
- (ii) discuss and resolve any issues or concerns in conducting the Research;
- (iii) make a decision on the issues or concerns if necessary for the Research to be continued; and
- (iv) do other things necessary for further coordination of the Research.

3.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수행할 책임과 의무를 부담한다.

- (i) 진행 중인 연구에 대한 정보 교환 및 공유
- (ii) 연구 수행 시 문제나 염려에 대한 논의 및 해결
- (iii) 연구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러한 문제나 염려에 대한 결정
- (iv) 연구의 추가 조정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사항들

운영위원회의 업무들 중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두었는데,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추가, 수정, 삭제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너무 제한하지 않도록 마지막 항목에 포괄적으로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3 Quorum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not deliberate and decide validly unles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participates in the mee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A member may be represented by a duly authorized proxy or agent at the meeting.

3.3 의사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 회원 과반수가 제3.1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건 검토 및 의결을 할 수 없다. 회원은 회의에서 적법한 권한이 있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 참석자수를 의사정족수(quorum)라고 한다. 그보다 참석자가 미달되면 유효한 결의를 할 수가 없다. 이는 운영위원회가 심의하고 결정하는 사항이 각 당사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정족수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가 출석하면 되는데, 국제공동연구의 특성 상 각 당사자가 일정을 조율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거리나 시간 상 참석이 어려울 수도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3.4 Voting Rules

Each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have one (1) vote. All or any decisions of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or repres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However, if a specific issue to be decided at the meeting by the Steering Committee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 Party to this Agreement, the Party shall be considered not present or represented in making a decision on the specific issue.

3.4 의결 규칙

운영위원회의 각 회원은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운영위원회의 모든 결정은 제3.3조에 따라 출석하거나 대리된 회원들 과반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운영위원회에 의하여 회의에서 결정될 특정 안건이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로부터 발생하거나 그 당사자와 관련된 경우에, 그 당사자는 그 특정 안건에 관한 의결 시 출석하거나 대리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회의를 유효하게 개최할 수 있는 의사정족수 외에도 안건이 유효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의결정족수도 있어야 한다.

보통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는데, 3 당사자 이상의 국제 공동연구일 때에는 의결 안건과 관련 있는 당사자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당 당사자를 의결에서 배제하면 출석 회원의 과반수에 도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되는데, 이는 공정한 의결을 위해 해당 당사자를 배제하는 의도와는 다소 달라진다. 의결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의결을 어렵게 만들자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 시에만 해당 당사자를 출석 회원에서 제외하여 나머지 출석 회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은 여러 국가의 당사자가 참여하는 국제공동연구에서는 모든 당사자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상식적인 내용이라도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모든 당사자들에게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5 Escalation

If the Steering Committee is not 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issues concerning the Research or this Agreement within [two (2)] consecutive meetings after the issues are raised at the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 issues shall be referred to the president, CEO or other senior management of each Party in an attempt to resolve the issues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referral. In the event of failure to resolve the issues at the senior management level, the issues shall be resolved by means of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3.5 상부 회부

운영위원회가 연구나 본 계약에 관한 문제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서 제기된 후 2번의 연속 회의에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해당 문제는 각 당사자의 대표자, CEO 또는 그 밖의 최고경영진에 회부되고, 회부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최고경영진 단계에서도 해당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무한정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으므로 고위 경영진 차원에서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운영위원회가 2번의 연속 회의에서 결론을 낼 수 없는 경우 고위 경영진에 문제를 회부하도록 하였고, 고위 경영진에서도 30일 이내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중재로 해결하도록 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당 절차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연구비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가. 연구비 각자 부담의 경우 (In case of bearing its own costs for Research)

4.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4.1 Costs for Research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of participating in and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4. 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4.1 연구비

각 당사자는 별지 B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연구비는 공동연구 범위 및 각 당사자의 업무 내용에 따라 각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어느 일방 당사자가 연구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각자가 연구비를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아예 연구비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각자가 연구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연구를 수행하여 예상된 결과물을 얻기만 한다면, 각자 부담하는 연구비를 굳이 상대방에게 밝힐 필요가 없고, 연구비를 얼마나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는지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4.2 Indemnification

Each Party shall indemnify the other Party and keep it indemnified against all and any refund, repayment or payment that the Party is required to make due to a Third Party in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4.2 면책

각 당사자는 별지 B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야 할 모든 환불, 재지급, 또는 지급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를 면책하고 계속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비를 각자 부담한다고 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어떠한 명목의 대금 지급을 부담시켜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면 연구비를 각자 부담하기로 했으면서도, 특정 물품을 구매하면서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동명의로 구매하여 상대방에게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도 금지하도록 미리 계약서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연구비를 일방이 제공하는 경우 (In case of supporting costs for Research)

4.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4.1 Costs for Research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of participating in and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4. 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4.1 연구비

각 당사자는 별지 B에 따라 연구에 참여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데 드는 각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연구비를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공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모든 연구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닌 한, 원칙적으로 각자의 연구비는 각자가 부담해야 한다.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한 일방 당사자는 약속한 연구비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고, 그렇게 지원 받은 연구비를 어떻게 쓸지, 추가로 자체 연구비를 투입할지 등은 연구비를 지원 받은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다.

4.2 Support of fund for Research

Notwithstanding Article 4.1, a Party who is responsible for supporting fund shall provide all or part of fund for the Research for or make payment due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Schedule C (Financial Contribution or Payment Plan).

4.2 연구비 지원

제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금을 지원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별지 C(금전적 기여 또는 지급 계획)에 따라 상대방에게 연구비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거나 지급하여야 한다.

어느 일방이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기로 하였다면,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별지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얼마의 연구비를 지급할 것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상대방이 제공해야 하는 것(예를 들면, 특정 연구결과물, 샘플, 시작품, 보고서 등)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비 지급 계획은 마치 물품 구입 대금을 지급하는 것과 유사하므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예정된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어 지연 손해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제공될 연구비, 지급예정일, 지급방법, 지급대가(있는 경우)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별지로 작성하고, 이를 본 계약서에 추가하여 계약의 일부로 하여야 할 것이다.

4.3 Penalty for delay

If a Party fails to provide fund or make payment, in whole or in part, in accordance with Schedule C in Article 4.2, the other Party may charge interest as a penalty for delay on the amount outstanding on a daily basis at the rate of [*four (4) percent*] per year, calculated from the next day of due date in accordance with Schedule C to the actual date of payment.

4.3 지연손해금

어느 당사자가 제4.2조의 별지 C에 따라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별지 C에 따른 지급일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4%의 비율에 의하여 일할로 계산한 이자를 지연손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비 지급은 마치 물품 구매대금 지급과 같이 취급할 수 있으므로, 예정된 지급일자에 예정된 연구비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 또는 지연이자를 요구할 수도 있다. 지연손해금은 정액이 될 수도 있고, 미지급 금액에 비례하여 연 몇 %로 계산할 수도 있다. 지연손해금은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정할 사항이지만, 한국 및 미국의 금리가 매우 낮고, 한국에서의 법정 금리가 연 5~6%인 점을 감안하여 우선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연 4%로 정하였는데, 이는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4.4 Indemnification

Notwithstanding Articles 4.2 and 4.3, each Party shall indemnify the other Party and keep it indemnified against all and any refund, repayment or payment that the Party is required to make due to a Third Party in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4.4 면책

제4.2조 및 4.3조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별지 B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해야 할 모든 환불, 재지급, 또는 지급에 대하여 다른 당사자를 면책하고 계속 면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공하는 것과, 어떠한 지급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행위는 연구비 지원과 관계없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

7.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5. INTELLECTUAL PROPERTY

5.1 Ownership of IP

(a) Background IP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wnership of the Background IP that each Party owns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To avoid any doubt, each Party owns and will continue to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ll of its own Background IP which is not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herein.

5. 지식재산

5.1 IP 소유권

(a) 기반 IP

본 계약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각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반 IP의 소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의문을 피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는 여기서 명시적으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라 개발된 것이 아닌 각자의 기반 IP 전부에 대한 모든 권리, 명의, 지분을 각자 보유하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의 소유, 활용, 이익 분배 등의 문제는 본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다. 공동연구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공동 소유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법제도가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계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은 공유 지식재산권의 활용 면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문제가 된다.

한편, 공동연구를 통해 만들어진 지식재산이 아니라 각 당사자가 공동연구 시작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기반 IP는 공동연구와 관계없이 각 당사자가 소유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공동연구의 기반이 되도록 제공되어 추후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를 활용할 때에도 필요할 수 있지만, 기반 IP에 대한 권리는 공동연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b)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All and any Research Results that are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including professors, students, scholars or consultants, whether full-time or part-time) of a single Party shall be solely owned by the Party.

(b)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

본 계약에 따라 일방 당사자의 1명 이상의 종업원(교수, 학생, 학자 또는 컨설턴트를 포함하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관계없음)에 의하여 단독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모든 연구결과는 그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한다.

공동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결과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어느 일방 당사자 단독으로 개발한 연구결과, 다른 하나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결과이다. 단독으로 개발한 연구결과는 이를 개발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할 수도 있고, 공동연구의 취지 상 공동으로 소유할 수도 있는데, 실제 계약에서는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며,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하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공동연구 범위에 포함되나 단독으로 개발한 연구결과는 이를 개발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규정하였으나,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공동 소유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다.

(c)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All and any Research Results that are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jointly by one or more employees (including professors, students, scholars or consultants, whether full-time or part-time) of a Party and those of the other Party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involved with the Research Results. Each joint owner shall have an equal interest in and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unless agreed otherwise by all of the joint owners.

(c)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

일방 당사자의 1명 이상의 종업원(교수, 학생, 학자 또는 컨설턴트를 포함하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관계없음) 및 다른 당사자의 1명 이상의 종업원에 의하여 본 계약에 따라 공동으로 개발되었거나 개발되고 있는 모든 연구결과는 그 연구결과에 관련된 당사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각 공동 소유자는 모든 공동 소유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구결과에 대하여 동일한 지분을 보유한다.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발명을 한 자가 원시적으로 모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고, 공동으로 개발하였다면 그러한 권리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동으로 소유하는 연구결과에 대한 지분을 어떻게 정하느냐이다. 공동으로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어느 일방 당사자가 더 많이 기여했을 수도 있는데, 이를 정량화할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물론 개발에 참여한 소속 연구자의 수로 정하거나, 각 당사자가 소요한 연구기간으로 정하거나, 그 밖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당사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찾는 것이 쉽지 않고, 모든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실제로 적용되기도 어렵다. 따라서 공동연구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공동소유 연구결과는 동일한 지분으로 보유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그나마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무상의 일부 계약에서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결과에 대하여 건 별로 달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다. 즉, 개발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각자의 지분, 사용 조건, 법적 보호를 위한 비용 분담과 관리 책임 등을 각 연구결과 별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일괄적으로 동일 지분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공정할 수 있겠으나, 실제로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 각 연구결과 별로 정할 경우 연구결과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고, 지분을 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며, 특히 각 연구결과 별로 공유지분, 사용조건, 관리책임 등을 일일이 정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를 논의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며, 그러한 연구결과가 많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울 수도 있다.

따라서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일단 동일 지분 보유를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였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한다면 본 조항의 내용도 변경하여 각 연구결과 별로 공유지분 등을 달리 정하도록 규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5.2 Protection of IP

(a) Background IP

The owner of Background IP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aking all necessary actions, legally or practically, to protect the Background IP such as application, prosecu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P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5.2 IP 보호

(a) 기반 IP

기반 IP의 소유자는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신청,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같이 기반 IP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또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기반 IP에 대한 특허 출원 등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할 모든 책임은 기반 IP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특허 등 지식재산이 등록 등 법적 보호절차를 받기 전에 일반에 공개된 경우에는 무효로 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한 법적 보호 절차에는 지식재산권 신청, 출원(즉, 신청부터 등록 전까지의 과정), 등록, 유지가 포함되며 그에 따른 각 비용도 기반 IP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만일 그러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별도의 다른 합의가 있는 것이 아닌 한, 그러한 모든 책임도 기반 IP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책임을 다른 상대방에게 전가할 수도 없을 것이다.

(b)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The owner of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b),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aking all necessary actions, legally or practically, to protect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such as application, prosecu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P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However, the other Party may request to jointly own the IP rights to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in a certain country, provided that the other Party pays for all the expenses (not including litigation costs for infringement, nullity, etc.) to apply for, prosecute, register and maintain the IP rights to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in the certain country.

(b)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

제5.1조(b)에 따라 일방 당사자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의 소유자는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신청,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같이 단독 소유 연구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또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특정 국가에서 해당 단독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 신청, 출원, 등록 및 유지 비용(침해, 무효 등에 대한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특정 국가에서의 해당 단독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는 본 계약서 샘플에서 그 연구결과를 개발한 당사자가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정하였는데, 그러한 단독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 책임도 해당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만일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약정하였다면 그러한 책임도 분담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독 소유 연구결과의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서의 법적 보호 조치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당사자들은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 않다. 미국의 당사자들에게는 한국에서의 특허 출원이 비용 대비 효용성이 크지 않을 수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특허 출원에 자금이 우선 투입되어야 할 필요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이나 다른 국가의 다른 당사자들은 단독 소유 연구결과가 공동연구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산출물인 만큼 자국에서 특허를 출원하여 보호를 받고 이를 활용하고자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만일 단독 소유 연구결과의 소유자가 특정 국가(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특허 출원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예를 들면 한국의 당사자)가 특허 출원 등 한국에서의 법적 보호를 위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한국에서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 측 당사자도 법적, 경제적으로 특별한 손해 없이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이익이고, 한국 측 당사자도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공동소유자가 되어 한국 내에서 이를 사용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양쪽에게 모두 이익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단서 조항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할 수 있다.

(c)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The joint owners of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c),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taking all necessary actions, legally or practically, to protect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such as application, prosecu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P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All the expenses required for protection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cluding litigation costs for infringement, nullity, etc.) shall be shared by all the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 proportion with the interest or share of each joint owner in or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However, if some of the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are not interested in seeking a legal protection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 a certain country, the other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may file an application for IP rights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at the expense of the other joint owners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 other joint owners are the sole owners of the IP rights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 the certain country.

(c)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

제5.1조(c)에 따라 양 당사자들에 의해 공동으로 개발된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공동 소유자들은 특허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지식재산권의 신청, 출원, 등록 및 유지와 같이 공동 소유하는 연구결과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 또는 실제적 조치를 취할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한다.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침해, 무효 등에 대한 소송비용은 포함하지 않음)은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각 공동 소유자의 지분에 비례하여 해당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모든 공동 소유자들이 분담한다. 그러나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공동 소유자들 일부가 특정 국가에서 해당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하는 데에 관심이 없는 경우, 해당 공동 소유 연구결과의 다른 공동 소유자들은 그 특정 국가에서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신청할 수 있다.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도 특허 출원 등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할 책임은 일단 공동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며, 비용도 지분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동일 지분으로 합의하였다면 비용도 동일하게 분담해야 할 것이다. 이 때 비용에는 특허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지식재산권을 얻기 위한 비용만 포함되고, 그 후 침해나 무효와 관련된 소송비용은 각 사건 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본 조항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한편,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 등을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공동소유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미국의 당사자는 한국에 비용을 투입하여 특허를 출원하는 것에 부정적인 경향이 있다. 한국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도 적고, 미국 시장에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며, 한국에서의 활용성도 낮게 평가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여러 공유자 중 어느 한 당사자가 특정 국가(예를 들면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기를 꺼려한다고 해서 나머지 공유자들은 당연히 특허 출원을 포기해야 하는가이다. 특히 한국의 당사자들은 미국의 당사자가 반대한다고 하여 한국에서의 특허 출원을 포기하는 것이 부당하고 억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만일 나머지 공유자들이 비용을 분담하여 특정 국가(예를 들면 한국)에 특허를 출원하는 대신, 그 국가에서 특허 출원을 하는 것에 반대한 당사자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그 국가에서 등록된 특허에 한하여 특허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를 통해 부당하여 특허 출원에 반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의 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들이 이와 같은 단서 조항에 반대한다면 해당 단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5.3 Use of IP and Grant of License

(a) Background IP

Each Party shall grant to the other Party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Background IP solely for non-commercial purpo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and utilizing the Research Results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any other purposes, the Background IP is not allowed to use whatsoever, unless the owner of the Background IP grants to the other Party a separate commercial license to use it on a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market.

5.3 IP 사용 및 라이선스 부여

(a) 기반 IP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그 후에도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기반 IP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불가, 무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한다. 기반 IP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기반 IP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기반 IP는 그 밖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기반 IP는 공동연구의 기초로 사용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종료된 후에 연구결과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반 IP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공동연구기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가 종료된 후에도 다른 당사자들이 기반 IP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기반 IP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하면 공동연구와 전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기반 IP 소유자에게는 일체의 보상도 없이 막대한 이익을 얻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기반 IP의 사용을 어느 정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반 IP에 대한 사용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사용하기 위한 비상업적 목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기반 IP는 공동연구를 위해 본 계약의 당사자들에게만 특별히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자가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반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무상(royalty-free)으로 하되, 비독점적(non-exclusive), 양도불가(non-transferable), 재실시불가(non-sublicensable)의 조건을 추가하여야 한다. 즉, 기반 IP의 소유자가 본 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본 계약의 다른 당사자들이 제3자에게 기반 IP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수 없도록 하며, 제3자에게 재실시권을 부여할 수도 없도록 사전에 제한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만일 다른 당사자들이 기반 IP를 상업적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거나 위와 같은 제한이 없는 권리를 얻고자 한다면, 별도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기반 IP 소유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본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b)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The owner of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b),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license or otherwise dispose of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at its own discretion without the consent of, without accounting to, and without any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 Furthermore, the owner of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shall grant to the other Party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for non-commercial purposes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any other purposes,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are not allowed to use whatsoever, unless the owner of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grants to the other Party a separate commercial license to use it on a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market.

(b)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

제5.1조(b)에 따라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의 소유자는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에 대한 설명, 상대방에 대한 보상 없이 단독 소유 연구결과를 제작, 사용, 대여, 판매, 라이선스 부여,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또한 단독 소유 연구결과의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그 후에도 비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단독 소유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불가, 무상의 라이선스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독 소유 연구결과의 소유자 상대방에게 시장에서의 합리적인 조건에 따라 해당 단독 소유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상업적 라이선스를 부여하지 않는 한, 단독 소유 연구결과는 그 밖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없다.

어느 일방 당사자에 의해 단독으로 개발된 공동연구결과도 다른 당사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공동연구의 근본적인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를 공동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만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하였다면, 다른 당사자들이 이를 무제한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해당 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단독 소유 연

구결과는 다른 당사자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비독점적, 양도불가, 재실시불가의 조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그 외의 목적을 위해서는 별도의 상업용 라이선스를 받도록 함으로써 해당 연구결과의 소유자가 일방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단독 소유 연구결과의 소유자는 다른 당사자에게 경제적 보상이나 다른 설명 또는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독 소유’의 의미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다른 조건을 합의한다면 본 조항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만일 단독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도 공동 소유하기로 합의하였다면, 본 조항은 삭제하고 아래의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에 대한 조항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이다.

(c)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The joint owner of the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c),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without accounting to, and without any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 (i)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at its own discretion, and (ii) to grant to Third Parties non-exclusive licenses (with or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to use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However, in the event that consent by each joint owner is required by applicable laws in a certain country for either joint owner to grant to Third Parties non-exclusive licenses to use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the Parties hereby consent to the other Party's grant of one or more licenses under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to Third Parties and shall execute any document or do any other act reasonably requested to evidence such consent.

(c)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

제5.1조(c)에 따라 양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의 공동 소유자는 상대방의 동의, 상대방에 대한 설명, 상대방에 대한 보상 없이 (i) 공동 소유 연구결과를 제작, 사용, 대여, 판매,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있고, (ii) 제3자에게 공동 소유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재실시권 포함 또는 미포함)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나 공동 소유자가 특정 국가에서 제3자에게 공동 소유 연구결과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라이선스를 부여하려면 적용 법률에 의하여 각 공동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할 경우에, 양 당사자들은 공동 소유 연구결과에 대한 1개 이상의 라이선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며, 그러한 동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그 밖의 행위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는 공동으로 소유하기로 하였다면, 공동 소유자의 권리가 어떻게 되느냐가 가장 관건이 된다. 공동 소유자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법규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특허법 제99조에서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직접 실시할 수는 있지만 통상실시권을 허락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미국 특허법에서는 그러한 제한이 전혀 없다.

따라서 미국에서는 특허 공동 소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공유특허를 사용할 수 있고, 지분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당사자는 한국의 당사자와 국제공동연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이러한 자유로운 권리를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계약서에도 보상, 설명,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만일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를 한국에서 출원한다면 지분 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국 법규정에 따라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되 한국 법규정에도 위반되지 않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 즉, 본 계약서 샘플에서와 같이, 만일 특정 국가(예를 들면 한국)에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증명할 문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은 이에 응하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이러한 단서 조항이 없다면, 한국의 당사자가 한국에 등록된 특허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분 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공유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어서 정당한 이유도 없으면서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한국의 당사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 지분 양도, 질권 설정, 통상실시권 허락, 전용실시권 설정 시 다른 공유자의 경쟁자에게는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사전에 다른 공유자에게 통지하도록 단서를 추가하는 것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5.4 Inventions by employees or a Third Party

(a) Where any Third Party such as a contractor is involved in conducting the Research, the Party engaging the Third Party shall ensure that the Third Party assigns to the Party all and any Intellectual Property the Third Party may obtain in conducting the Research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section.

(b)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own employees involved in conducting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assign to the Party all and any Intellectual Property that the employees may obtain in conducting the Research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section.

5.4 종업원이나 제3자에 의한 발명

(a) 제3자가 수급인으로서 연구수행에 관련되는 경우에 그 제3자를 고용한 당사자는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3자가 얻은 모든 지식재산을 그 당사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b) 각 당사자는 본 조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과 관련된 종업원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얻은 모든 지식재산을 그 당사자에게 양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한국과 미국 모두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종업원인 발명자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승계 약정이 없다면 회사는 종업원이 개발한 연구결과를 소유하지 못한다. 그러나 본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의 소유, 사용 등은 모두 각 당사자가 연구결과를 소유한다는 전제 하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만일 어느 당사자의 종업원과의 승계 약정 미비 등으로 인해 본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본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의 소유,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이행할 수가 없다. 그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본 조항에서 종업원으로부터 모든 권리를 승계할 책임을 각 당사자에게 부과함으로써, 만일 본 계약에 따른 연구결과의 소유, 사용 등에 대한 규정을 불이행하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을 해당 당사자에 물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8. 비밀유지 (Confidentiality)

6. CONFIDENTIALITY

6.1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s, materials and know-how, shall be considered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 (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with “confidential,” “proprietary” or some similar indication marked;
- (ii) information that is expressly advi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be confidential in a written or tangible form;
- (ii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orally or otherwise than in tangible form provided that it must be identified as “confidential” at the time of disclosure and a written summary must be provided to the receiving Party within twenty (20) days thereafter; or
- (iv) information that would be reasonably constru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receiving Party.

6. 비밀유지

6.1 비밀정보의 정의

문서, 자료, 노하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음의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비밀정보로 본다.

- (i) “기밀”, “사유”, 그 밖의 유사한 기재가 표시되어 공개된 정보
- (ii) 공개 당사자가 서면 또는 유형의 형태로 기밀임을 명시한 정보
- (iii) 구두 또는 유형의 형태 외의 형태로 공개된 정보로서, 공개 당시에 “기밀”이라고 밝혀져야 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제공받는 당사자에게 서면 요약 문서가 제공되어야 함.
- (iv) 여러 정황상 제공 받는 당사자에 의하여 기밀정보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보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것이므로 양 당사자들의 중요한 기술자료나 기타 비밀정보가 각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계약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상대방에게 전달된 비밀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각 당사자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주의를 하는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비밀정보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한 후 그러한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자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가 무엇인지 명확히 정하여야 한다. 여기서는 4가지를 비밀정보로 정의하였는데, (i) “기밀(Confidential)”, “사유(Proprietary)” 또는 그와 유사한 표시가 찍혀 있거나, (ii) 다른 서면 수단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기밀이라고 알려졌거나, (iii) 구두나 비서면의 형태로 공개되었으나 공개 당시 기밀이라고 밝힌 후 다시 서면으로 알렸거나, (iv) 정보를 받는 일방 당사자가 정황상 기밀이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정보에 해당되면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만일 당사자들이 비밀정보의 정의에 추가할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면 협의하여 추가하거나 본 계약서 샘플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본 가이드라인에 첨부되어 있는 비밀유지협약서와 같이 별도로 비밀정보를 주고받는 당사자 사이에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6.2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The receiving Party of the disclosing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obliged:

- (i) to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 (ii) not to disclose for any other purposes any part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including its own Affiliat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unless expressly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disclosing Party;
- (iii) to limit dissemination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to its employees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and
- (iv) to protec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 the same degree of care, but no less than a reasonable standard of care, as it protects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6.2 비밀유지의무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i) 해당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ii) 공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관계사를 포함)에게 해당 비밀정보의 어떠한 부분도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함.
- (iii)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되는 종업원에게만 해당 비밀정보의 전파를 제한해야 함.
- (iv)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주의로, 그러나 합리적인 표준의 주의 이하는 되지 않도록 하여 해당 비밀정보를 보호해야 함.

이러한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하여 어떠한 행동을 하여야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규정하여야 한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는, (i) 위에서 정한 비밀정보를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고, (ii) 비밀정보 소유자의 명시적인 허락이 없는 한, 제3자는 물론 본 계약에 따른 연구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위 비밀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되며, (iii)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과 직접 관련이 되는 직원에게만 위 비밀정보를 전달해야 하고, (iv) 전달 받은 상대방의 비밀정보는 자신의 비밀정보를 유지하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비밀정보를 유지하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합리적인 기준에서 평균 이상의 노력은 하도록 단서를 추가하였다.

본 계약서의 샘플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4가지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으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추가할 수도 있다.

6.3 Excep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not include information that

- (i) is already part of the public domain as of the time of its disclosure;
- (ii) is subsequently learned from a Third Party without a duty of confidentiality;
- (iii) was already in the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at the time of disclosure;
- (iv) was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receiving Party or its employees without reference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ing Party provides with; or
- (v) is required to be disclosed pursuant to a court order or government authority, whereupon the receiving Party should, at its earliest opportunity, provide a written notice to the disclosing Party prior to such disclosure for the disclosing Party to secure a protective order or take other appropriate action.

6.3 예외

비밀정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공개 당시 이미 공공영역의 일부인 정보
- (ii) 비밀유지의무 없는 제3자로부터 추후 배운 정보
- (iii) 공개 당시 제공받는 당사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정보
- (iv) 공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제공받은 당사자 또는 그 종업원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v) 법원 명령 또는 정부 당국에 의해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로서, 제공받은 당사자는 가장 빠른 시기에 공개 당사자가 보호명령을 받거나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공개 전에 공개 당사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함.

문언상으로는 위에서 정의한 비밀정보에 해당된다 하여도, 실제로는 비밀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비밀유지의무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예들로 여기서는 5가지를 규정하였는데, (i) 비밀정보를 상대방으로부터 전달 받을 당시 이미 외부에 공개된 정보이거나, (ii)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제3자로부터 얻은 정보이거나, (iii) 상대방으로부터 전달 받을 당시 이미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거나, (iv) 상대방이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이거나, (v) 법원의 명령이나 정부 관계기관의 명령에 의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는, 여기서 규정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외에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다.

6.4 Period

The terms regarding the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a period of [five(5)year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6.4 기간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조항들은 그러한 비밀정보가 공개된 날로부터 5년 간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

비밀정보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이상, 영원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 무한정의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경쟁업체와 협상 목적 외에는 무한정의 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 후, 협상 과정에서 고의로 자사의 주력 제품 관련 비밀정보를 일부 공개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사의 제품과 관련된 활동을 무한정의 기간 동안 제한할 가능성도 있다. 또한 그러한 위험은 협상 과정에서 자사도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무한정의 기간 동안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양 당사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밀정보의 중요성, 기술 발전 추세 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무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통 3~10년 사이에서 양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비밀유지의무 기간을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후 5년간으로 일단 정하였으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얼마든지 변경 가능하다.

6.5 Termination of Agreement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upon written request of the disclos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return all the originals, copies, derivatives and relevant materials of the disclosing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t the disclosing Party's option destroy any remain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certify in writing that such destruction has taken place. However, the receiving Party may request a copy of relevant Research documentation when it is needed for audit purposes.

6.5 계약 해지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시, 공개 당사자가 서면 요청하면, 제공받은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의 모든 원본, 복사본, 변형본 및 관련 자료를 즉시 반환해야 하고, 공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나머지 비밀정보를 폐기한 후 그러한 폐기가 이루어졌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공받은 당사자는 감사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연구 서류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된 경우,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전달하였던 비밀정보는 원래 소유자에게 전부 반환되거나 그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폐기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반환되어야 할 비밀정보는 원본 및 사본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어 만들어진 자료 및 그와 관계되는 자료를 모두 포함한다. 만일 비밀정보 소유자가 비밀정보의 폐기를 원할 경우, 그 상대방은 위의 모든 자료를 폐기하였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회계상의 목적으로 관련 자료의 사본이 필요할 경우에는 비밀정보 소유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는 있다.

9. 출판 (Publications)

7. PUBLICATIONS

7.1 Right to Publish

Subject to any applicabl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each Party is free to publish reports or papers of the Research and other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cademic standards. Any such reports or papers may refer to the fact that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7. 출판

7.1 출판할 권리

적용되는 비밀유지의무에 따르는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된 연구 및 그 밖의 활동에 관하여 보고서나 논문을 학계 표준에 따라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다. 그러한 보고서나 논문은 연구가 본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할 수 있다.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당사자 중에서 학교나 연구원 등 비영리기관은 기술을 직접 실시하여 사업화하지 않기 때문에 제3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거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에 더 관심이 많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출판과 관련된 조항을 반드시 추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결과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논문 출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편이다. 다만, 공동으로 개발된 연구결과이므로 공동 소유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특히로 출원한다 하여도 아직 출원 전이라서 논문 등으로 공개되어서는 안 될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출판을 허용하되, 출판을 위해 원고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에 다른 당사자에게 해당 원고를 미리 제공하여 우선 검토하도록 하고, 출판될 내용에 그 당사자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특히 출원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삭제하거나 출판을 위한 원고 제출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비밀 공개나 특히 출원 전 공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삭제나 연기 요청을 부당하게 악용하여 출판을 제한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삭제나 연기 요청에 무조건 응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수준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이상 연기를 할 수는 없도록 하는 등의 단서를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7.2 Review and Comment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agrees to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copy of any such reports or papers (excluding student thesis and/or dissertations) of the Research for review and comment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submission for publication. The other Party can then (i) request deletion from the publication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has been inadvertently included and/or (ii) request an additional [sixty (60) day] delay in submission for publication to allow time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legal protection on the Research Results in which the other Party has an ownership interest.

7.2 검토 및 조언

본 계약기간 동안 및 그 후, 각 당사자는 출판을 위해 제출하기 최소 30일 전에 검토 및 조언을 위해 연구에 관한 보고서나 논문(학생 논문은 제외)의 사본을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데에 동의한다. 상대방은 (i) 부주의하게 포함된 비밀정보를 출판물에서 제거 요청 및/또는 (ii) 자신이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는 연구결과에 대한 법적 보호를 위한 신청을 할 시간을 얻기 위해, 출판을 위한 제출을 추가적으로 60일 늦춰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출판을 위한 원고 제출 30일 전에 원고를 상대방에게 제공하고, 그 상대방은 비밀정보가 포함된 경우 삭제를 요청하거나 특허 출원을 위해 원고 제출 전까지 추가로 60일의 시간을 더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위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출판과 관련되어 이견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를 통해 해결하는 등의 보완 조치를 단서로 추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10. 면책 (Indemnification)

8. INDEMNIFICATION

8.1 Disclaimers

ANY AND ALL INFORMATION, MATERIALS,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PROPERTY AND RIGHTS GRANTED AND/OR PROVIDED BY EACH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E GRANTED AND/OR PROVIDED ON AN "AS IS" BASIS. ANY PARTY MAKES NO WARRANTIE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AS TO ANY MATTER, AND ALL SUCH WARRANTIES, INCLUDING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EXPRESSLY DISCLAIME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PARTY DOES NOT MAKE ANY WARRANTY OF ANY KIND RELATING TO EXCLUSIVITY, INFORMATIONAL CONTENT, ERROR-FREE OPERATION, RESULTS TO BE OBTAINED FROM USE, FREEDOM FROM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AND/OR FREEDOM FROM THEFT OF TRADE SECRETS. EITHER PARTY IS PROHIBITED FROM MAKING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TO ANY THIRD PARTY ON BEHALF OF THE OTHER PARTY RELATING TO ANY MATTER,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OR THE RESULTS TO BE OBTAINED FROM THE INFORMATION, MATERIALS,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PROPERTY OR RIGHTS GRANTED AND/OR PROVIDED BY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8. 면책

8.1 책임 부인

본 계약에 따라 각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거나 제공된 모든 정보, 자료, 서비스, 지식재산 및 그 밖의 재산과 권리는 현재를 기준으로 부여되거나 제공된다. 어느 당사자도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어떠한 종류의 보장도 하지 않으며, 사업화 가능성 및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을 포함한 그러한 보장은 명시적으로 부인된다. 앞선 내용의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어느 당사자도 독점성, 정보의 내용, 오차 없는 작동, 사용 시 얻게 될 결과, 특히, 상표 및 저작권 비침해, 영업비밀 비침해와 관련된 어떠한 종류의 보장도 하지 않는다. 어느 당사자도 본 계약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의해 부여되거나 제공된 정보, 자료, 서비스, 지식재산 또는 그 밖의 재산이나 권리의 신청 또는 그로부터 얻어질 결과를 포함한 어떠한 사항과 관련하여서도 그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제3자에게 어떠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보장을 하지 않아야 한다.

공동연구의 성격 상 연구결과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보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결과가 계획대로 얻어질 지부터 시작하여, 연구결과 의 성공, 성능, 사업화 가능성, 정확성, 특허 받을 가능성, 제3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을 가능성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보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그러한 보장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도 부당하고 불합리하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는 연구결과와 관련되어 일체의 보장도 하지 않으며, 연구결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면책된다는 내용을 '대문자'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2 Limitation of Liability

EITHER PARTY SHALL NOT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OR ANY THIRD PARTY FOR ANY REASON WHATSOEVER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FOR LOSS OF PROFITS OR FOR INCIDENTAL, INDIRECT,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EVEN IF THE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OR HAS OR GAINS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SUCH DAMAGES.

8.2 책임 제한

어느 당사자도 다른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이유(본 계약의 위반도 포함)로도, 이익 손실 또는 우발적, 간접적, 특별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당사자가 그러한 손해의 가능성을 조인 받았거나 그러한 손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연구결과에 대한 면책뿐만 아니라 본 계약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발생할 손해나 손실에 대해서도 어떠한 보장을 하지 않는다. 본 계약에 투입하는 연구비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법적, 경제적, 행정적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본 계약의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 하여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는 어느 누구도 사전에 보장할 수가 없다. 본 계약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모든 위험을 스스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계약서 샘플과 같이,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8.3 Indemnification

Either Party shall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including its trustees, officers, employees, attorneys and agent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y, damage, loss or expens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or imposed upon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suit, action or demand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any exercise of any right or license granted or provided to the Party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use of the Research Results, under any theory of liabil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ions in the form of tort, warranty, or strict liability, or violation of any law, and regardless of whether such action has any factual basis.

8.3 면책

어느 당사자도, 연구결과의 사용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그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제공된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의 행사로부터 또는 행사에 관하여 발생한 어떠한 청구, 소송, 행위, 요구와 관련하여, 다른 당사자에 의해 발생하거나 그 다른 당사자에게 부과된 어떠한 책임, 손해, 손실 또는 비용(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포함)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보증, 엄격한 책임, 위법의 형식인 행위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어떠한 책임 이론으로도, 그러한 행위가 사실에 기초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탁자, 임원, 종업원, 변호사, 대리인을 포함한 그 다른 당사자를 방어하고, 면책하며, 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보장도 하지 않고,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도 보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에게 제공한 정보나 자료, 기반 IP를 포함한 일체의 기술에 대하여도 어떠한 보장을 할 수 없다. 정보 등을 제공한 자는 제공된 정보 등이 정확한지, 연구에 도움이 되는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사용 시 제3자와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하여 그 상대방에게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도 그러한 면책 조항을 규정하였다.

11. 기간 및 해지 (Term and Termination)

9. TERM AND TERMINATION

9.1 Term of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Research specified in Schedules A and B, unless terminated earlier for the reasons set forth hereunder.

9. 기간 및 해지

9.1 계약기간

본 계약은 여기 정해진 이유들로 인하여 조기에 해지되지 않는 한, 별지 A 및 B에서 정해진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계약기간은 연구기간과 같을 것이므로 계약서 본문에 명시하거나, 또는 별지의 연구 범위에서 연구기간을 명시한 후 계약서 본문에서는 별지에 따른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정할 수 있다.

한편, 공동연구의 규모가 점차 커짐에 따라 공동연구가 단계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1차로 2년을 진행하여 중간 점검을 하고, 2차로 2년을 더 수행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경우 공동연구개발계약을 단계별로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1차 공동연구가 완료되면 2차 공동연구에 대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된다.

9.2 Termination

(a) In the following cases of default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f defaults are not remedi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defaulting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aulting Party”) to remedy the defaults:

- (i) The Defaulting Party delays its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Agreement without a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or
- (ii) The Defaulting Party commits other breach of this Agreement.

(b) In the following cases, either Party may immediately terminate this Agreement:

- (i) The other Party becomes insolvent or bankrupt;
- (ii) Petition is filed by or against the other Party under bankruptcy law,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debtor rehabilitation law or any other law for relief of debtors and for similar purposes;
- (iii) The other Party assigns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its business or assets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or
- (iv) The other Party is considered objectively unable to remedy defaults or continue to perform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other reasons.

9.2 해지

(a) 다음의 계약불이행 시, 일방 당사자는 계약불이행 당사자(이하 ‘계약불이행 당사자’)에게 해당 계약불이행을 시정하도록 서면 통지한 후 30일 이내에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i)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 (ii) 계약불이행 당사자가 그 밖에 다른 본 계약 위반행위를 한 경우

(b) 다음의 경우, 일방 당사자는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i) 상대방이 지급불능 또는 파산한 경우
- (ii) 파산법, 기업재조직법, 채무자 회생법, 또는 채무자 구제나 그와 유사한 목적의 다른법에 따라 상대방이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iii) 상대방이 영업이나 자산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을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한 경우, 또는
- (iv) 그 밖의 다른 이유로 상대방이 계약불이행을 시정하거나 본 계약에 따른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상대방의 계약불이행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 통지로 시정을 요구한 후 30일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정되지 않으면 해지를 할 수 있는 상대방 귀책사유로는 2가지를 두었는데, 하나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본 계약상의 다른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이다. 결국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한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해지사유를 추가할 수 있다.

위 2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30일 내에 시정이 되지 않으면 그 상대방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이므로, 상대방에게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심각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더 이상 본 계약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내의 시정 요구 없이 즉시 해지할 수 있다. 그러한 사유로는 4가지를 두었는데, 첫째 상대방이 지급불능 또는 파산한 경우, 둘째 파산법이나 기업회생법과 같은 법률에 의하여 파산 신청이나 회생절차에 들어간 경우, 셋째 영업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양도하여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경우, 넷째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을 시정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거나 본 계약상의 의무들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다. 이 때 객관적으로 계약 이행이 불능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 종종 당사자 간에 달리 해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시정 통보 3회 이상 누적된 경우, 또는 담당 연구 인력이 30퍼센트 이상 감축된 경우와 같이 구체적인 사유를 추가로 명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위 4가지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상대방은 시정 요구 통지 없이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당사자가 다수일 경우 그 중 하나 또는 일부의 당사자만 국제공동연구개발에서 자발적으로 빠지고자 한다면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들에 의하여 참여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계약 전체를 해지한 후 나머지 당사자들끼리 다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

한 번거로움을 회피하기 위하여 계약의 해지뿐만 아니라 계약의 탈퇴(withdrawal) 규정을 추가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국제공동연구개발에서 자발적으로 빠지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들 및 운영위원회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면, 운영위원회에서 그 당시까지 진행된 연구결과의 권리 귀속, 미완성된 연구의 진행을 위한 업무 분배, 탈퇴하는 당사자의 기반 IP에 대한 나머지 당사자들의 사용 권한, 연구비 분담, 일정 조절 등 탈퇴에 따른 제반 사항을 검토하여 탈퇴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다.

실례로 어느 당사자가 중도에서 탈퇴를 하는 경우에 그러한 탈퇴가 나머지 당사자들의 연구개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므로, 탈퇴하는 당사자가 보유한 기반 IP에 대한 사용 권한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반면, 탈퇴하는 당사자는 더 이상 공동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즉, 탈퇴하는 당사자의 의무는 그대로 유지시키되 권리는 박탈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처리함으로써 탈퇴하는 당사자가 탈퇴로 인한 불이익을 부담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탈퇴로 인한 권리관계 변화도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탈퇴 시 외부의 연구비 지원 기관의 동의를 필요한 경우 그러한 절차까지 운영위원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어느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탈퇴시키고자 한다면, 운영위원회에서 해당 당사자의 계약 위반 여부를 심의하여 최종 판단하도록 하고, 탈퇴가 결정되면 위와 같은 여러 사항들을 추가로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탈퇴와 함께 새로운 당사자를 국제공동연구개발에 참여시키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운영위원회에서 새롭게 참여하는 당사자의 기반 IP에 대한 다른 당사자들의 사용 권한, 기존 연구결과에 대한 새 당사자의 사용 권한, 연구개발 업무의 분배, 연구비 부담이나 지원, 외부 연구비 지원 기관과의 협의 및 동의 확보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9.3 Effect of Termination

Upon arrival of a notice of termination, each Party must return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ll materials, documents, facilities, software and any other IP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9.3 해지의 효과

해지 통지가 도착하는 즉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연구를 수행할 목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모든 자료, 문서, 설비, 소프트웨어, 그 밖의 다른 IP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

계약 해지의 의사가 전달되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면,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상대방의 자료나 IP를 더 이상 사용, 보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즉시 모든 자료 및 설비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반환 의무가 있는 쪽이 반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12. 존속 규정 (Survival of Provisions)

10. SURVIVAL OF PROVISIONS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set forth herein that expressly or by their nature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5)

Confidentiality (Section 6)

Publications (Section 7)

Indemnification (Section 8)

Governing Law (Section 14)

Dispute Resolution (Section 15)

General (Section 16)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subsequent to and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til they are satisfied or by their nature expire, and shall bind the Partie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10. 존속 규정

지식재산 (제5조), 비밀유지 (제6조), 출판 (제7조), 면책 (제8조), 준거법 (제14조), 분쟁 해결 (제15조), 일반 (제16조)을 포함하여, 여기서 명시적으로 또는 성질상 본 계약의 만료나 해지 후 존속하는 양 당사자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만족되거나 성질상 만료될 때까지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계속 유지하며, 양 당사자들, 법률대리인, 승계인, 허용된 수탁인을 구속한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 더 이상 효력이 없더라도 일부 조항들은 계속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비밀유지나 분쟁해결과 같은 조항이 그러하다.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더라도 비밀정보는 계속 유지되어야 하고, 계약 해지 등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나 지침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만료되어 효력을 상실해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정해놓거나 또는 그 성질상 당연히 효력이 유지되는 조항들은, 지식재산 (제5조), 비밀유지 (제6조), 출판 (제7조), 면책 (제8조), 준거법 (제14조), 분쟁 해결 (제15조), 일반 (제16조)이 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13. 통지 (Notice)

11. NOTICE

(a) Any notice to the o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y giving it, and provided either in person, by registered mail, certified mail, reputable international courier, or any other communication means with confirmation of receipt available to the following address:

(i) to KAI:

Korean ABC Institute
12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138-050
Attention: Mansoo Lee, President
Fax: +82-2-123-4567
Email: mslee@KAI.com

(ii) to AXU:

American XYZ University
456 Main Street
New York City, NY 12345, USA
Attention: Kevin Moore, Vice President
Fax: +1-800-123-4567
Email: moore@AXU.com

(b) Either Party may update its contact information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s required by this section.

(c) Either Party shall not be liable to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caused by the other party's negligence in updating its contact information.

11. 통지

(a) 본 계약에 따른 상대방에 대한 통지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통지하는 당사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하며, 다음의 주소로 인편, 등기우편, 배달증명우편, 유명한 국제특송업체 또는 수신 확인이 가능한 그 밖의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한다.

(i) KAI 수신

(ii) AXU 수신

(b) 일방 당사자는 본 조에서 요구되는 바와 같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여야 한다.

(c)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의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의무 태만으로 인하여 발생한 본 계약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본 계약상의 통지, 요청, 요구, 결정 등은 본 계약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때 서면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추적 서비스가 제공되는 국제 특송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그 밖에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의사소통수단(예를 들면, 수신 확인 가능한 팩스, 수신 확인 가능한 이메일 등)으로도 보낼 수 있다.

또한 각 당사자의 연락처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만일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여 상대방이 중요한 통지를 적시에 하지 못하거나 의사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그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러한 의무를 게을리 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될 것이다.

14. 불가항력 (Force Majeure)

12. FORCE MAJEURE

12.1 Suspension of Obligations

If either Party is unabl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ecause of circumstance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y, such as floods, fires, accidents, earthquakes, riots, wars, acts of government, epidemic, terror or destruc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ce Majeure Event”), the Party affected by the Force Majeure Event shall immediately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shall do everything reasonably practicable to resume performance. Upon receipt of such notice, all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mmediately suspended and any delays due to the Force Majeure Event are excused for the period of such Force Majeure Event.

12. 불가항력

12.1 의무 정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홍수, 화재, 사고, 지진, 폭동, 전쟁, 정부의 행위, 전염병, 테러, 생산 시설 파괴와 같이 그 일방 당사자의 합리적 통제를 넘어서는 상황(이하 “불가항력 상황”) 때문에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다면, 그러한 불가항력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는 그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이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통지를 받는 즉시,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의무는 정지되고, 그 불가항력 상황에 의한 이행 지체는 그러한 불가항력 상황 기간 동안 면책된다.

계약불이행은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불가항력에 의한 계약불이행 또는 이행지체의 경우는 예외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홍수, 화재, 사고, 지진, 폭동, 전쟁, 정부 활동, 전염병, 테러, 생산 시설의 파괴 등 어느 일방 당사자가 예방을 위해 노력했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의한 이행지체나 계약불이행은 면책된다.

이러한 불가항력 사태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즉시 이러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이러한 통지가 전달된 이후에는 그 불가항력 사태가 지속되는 동안 본 계약상의 모든 의무가 잠시 중단된다. 그러나 상대방에게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의한 계약이행 의무 중단 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불이행이나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12.2 Termination by Long-term Suspension

If the period of suspension exceeds sixty (60) days from the receipt of notice of the Force Majeure Event, the Party not affected by the Force Majeure Eve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12.2 장기간 정지에 의한 해지

의무 정지 기간이 불가항력 상황에 대한 통지 수령 후 60일을 초과하면, 그 불가항력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은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서면의 해지 통보를 함으로써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불가항력 사태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조속한 시간 내에 계약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불가항력 사태는 대부분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재해 및 사고이므로, 이로 인한 피해를 단기간에 복구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나 계약이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계약이행 의무를 중단시켜 놓을 수도 없으므로,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불가항력 사태가 6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서면으로 본 계약의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필요하면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3 Duty of Prevention

The Parties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 to prevent such Force Majeure Event or to minimize damage and interruption on performance of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by implementing disaster recovery plan, business continuity plan or any other prevention system.

12.3 예방 의무

양 당사자들은, 재해 복구 계획, 업무 지속 계획, 그 밖에 다른 예방 시스템을 구현함으로써, 그러한 불가항력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본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에 대한 피해나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

불가항력 사태는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수준의 재해 및 사고이므로, 이를 인력으로 예방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피해를 감소시키거나 복구 기간을 단축시키거나 예비 또는 백업 인력 및 설비를 갖추는 등의 노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이러한 업무 지속 계획이나 재해 복구 계획, 기타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주의적 조항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한다는 조항이므로, 설사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입증하기도 어렵고 그에 따른 제재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취지의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15. 수출 제한 (Export Controls)

13. EXPORT CONTROLS

Each Party is subject to any and all applicabl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its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either Party will not provide or make accessible to the other Party any export-controlled information or materials without first informing the other Party of the export-controlled nature of the information or materials and obtaining from the other Party its written consent to accept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as well as any specific instructions regarding the mechanism pursuant to which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should be passed. To the extent there is a situation where the transfer of information, data or materials from a Party to the other Party requires an export control license from the pertinent agency of the respective government and/or written assurances by the Party that it shall not export data or commodities to certain foreign countries without prior approval of such agency, the Party understands that the other Party cannot guarantee that such a license will be issued.

13. 수출 제한

각 당사자는 본 계약의 이행 시 적용되는 모든 수출 제한 법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에 양 당사자들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정보나 자료의 수출 제한 성격에 대하여 먼저 알리지 않고, 그러한 정보나 자료가 통과해야 할 방법에 관한 특정 지시 및 그러한 정보나 자료를 수령하겠다는 상대방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그러한 수출 제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접근 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임을 동의한다. 일방 당사자로부터 상대방으로의 정보, 데이터 또는 자료 이전이 각 정부의 관련 기관으로부터 수출 제한 허가 및/또는 그러한 기관의 사전 허락 없이 외국의 특정 국가에게 데이터 또는 일용품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일방 당사자의 서면 보증이 요구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러한 허가가 제공될 것임을 보증할 수 없음을 이해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주요 기술에 대한 국외 유출에 매우 민감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해외로 이전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고, 미국의 경우에도 그러한 허가를 필요로 한다. 특히 국방과 관련 기술은 통제가 심하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하고자 한다면, 각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기술의 이전이 필요한 분야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국제공동연구가 필요하다면, 각 국가로부터 그에 필요한 사전 허가를 받거나 사전 신고를 해야 하고, 그 절차도 복잡할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허가를 받는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러한 위험을 모두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이 통제되지 않는 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개발을 협의하였으나 일방 당사자가 수출이 통제되는 기술을 이전한다거나 이전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을 위반하였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항과 같이 수출이 통제될 수 있는 정보, 자료, 기술 등은 제공하지 않도록 사전에 합의하고, 의도하지 않게 그러한 정보, 자료, 기술 등에 상대방이 접근하지 않도록 각 당사자에게 주의를 시킬 필요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예방을 위해서는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제한을 가하거나 통제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처음부터 국제공동연구를 추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6. 준거법 (Governing Law)

14. GOVERNING LAW

[Option 1] Laws of Korea

The validity,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Option 2] Laws of US

The validity,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tate of NewYork].

[Option 3] Laws of third country (e.g. England)

The validity,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ngland].

14. 준거법

[선택1: 한국법]

본 계약의 효력, 해석, 이행은 대한민국의 법에 따른다.

[선택2: 미국법]

본 계약의 효력, 해석, 이행은 뉴욕주의 법에 따른다.

[선택3: 제3국법(예: 영국)]

본 계약의 효력, 해석, 이행은 영국의 법에 따른다.

준거법은 본 계약의 적용이나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하면, 본 계약의 특정 조항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는 한국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계약의 경우에는 준거법을 어느 나라의 법으로 할 것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계약의 당사자들은 당연히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충돌하게 된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미국의 당사자는 한국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를 고집하고, 한국의 당사자는

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미국의 당사자의 의사를 따를 수밖에 없어서 준거법을 미국법, 정확히는 해당 당사자가 위치한 미국의 주법(주로 뉴욕, 메사추세츠, 캘리포니아)을 준거법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와 같이 준거법을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자국법으로 정하면, 해당 법제도에 대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그 상대방은 계약의 적용 및 해석에 있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도 직접 대응이 불가능하므로 어쩔 수 없이 현지 대리인이나 국내의 외국변호사를 고용할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도 더 지불할 수밖에 없는 반면, 자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당사자는 자국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므로 직접 대응이 가능하고 그만큼 분쟁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대응 전략이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이른바 ‘홈그라운드 어드밴티지(home ground advantage)’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공정한 국제계약이 되려면 준거법은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자국법보다는 제3국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계약에서 많이 사용되는 준거법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영미법이기도 하나, 최근에는 한국의 당사자들이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한국의 법체계는 판례법인 영미법이 아니라 대륙법인 독일법과 유사하기 때문에 독일법 체계에 보다 익숙한 국내의 변호사나 전문가들이 낯선 영미법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문법인 독일법을 직접 분석함으로써 이른바 분쟁 전개 과정에서 ‘예측가능성’도 더 크기 때문이다.

한편, 미국의 당사자는 한국의 당사자가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경우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을 쉽게 양보하는 편이지만, 영미법 체계를 벗어나는 것은 거의 양보하지 않는 편이다. 따라서 제3국법 중에서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법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미국의 당사자에게 유리할 수는 있겠으나, 미국의 당사자에게도 다른 나라의 법이라는 점에서 계약상의 분쟁을 제3국에서의 국제분쟁으로 쉽게 확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한국의 당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준거법은 분쟁해결의 장소와 연관이 되는데, 만일 준거법을 양보했다면 분쟁해결의 장소를 양보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준거법을 영국법으로 했다면 분쟁해결의 장소는 한국의 당사자에게 거리, 비용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한 지역(예를 들면 싱가포르)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도 좋은 협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7. 분쟁 해결 (Dispute Resolution)

15. DISPUTE RESOLUTION

15.1 Good-Faith Negotiation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shall be attempted to be settled through good-faith negotiation between senior management of both Parties. The Parties agree to discuss their differences in good faith and to attempt to reach an amicabl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discussion will be confidential and may not be used in a later evidentiary proceeding.

15. 분쟁 해결

15.1 호의적 협상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계되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 당사자들의 고위급 임원간의 호의적 협상에 따라 해결하도록 한다. 양 당사자들은 견해 차이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의논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에 이르도록 노력하는데 동의한다. 이러한 논의는 비밀로 유지되고 향후 재판에서의 증거로 사용되지 아니한다.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크게 2가지 단계로 해결을 모색할 수 있다. 우선 계약당사자의 고위 임원들이 직접 협상을 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그러한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소송보다는 중재를 진행한다. 중재는 각국의 중재원 중 한 곳을 양 당사자들이 지정하면 그 중재원에서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형식의 중재를 실시한다. 중재자들은 현직 법관이 아니라 퇴직한 법관이나 법률전문가들로서,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형식으로 사건을 심리한 후 판단을 내리게 되며, 중재원의 결정은 양 당사자들의 중재합의에 따라 구속력을 가지게 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중재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중재합의에 의한 구속력 때문에 부적법 각하 판결을 받게 된다.

15.2 Arbitration

(a) In the event that negoti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1 does not result in a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Parties shall proceed to binding arbitration to finally settle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1) or three (3)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place of arbitration will be [London].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b) The arbitrator'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c) All aspects of the arbitration will be confidential. Neither Party may disclose the existence, content or results of the arbitration, except as necessary to comply with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d)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limit the Parties' right to seek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or to enforce an arbitration award in any applicable competent court of law.

15.2 중재

(a) 협상이나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양 당사자들은 국제 상공회의소 중재 규정에 따라 1명 또는 3명의 중재인에 의한 구속적인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중재 장소는 런던으로 하고 언어는 영어를 사용한다.

(b) 중재인의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

(c) 중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비밀로 유지된다. 법률상 또는 규정상 요구되는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당사자도 중재의 존재, 내용,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d) 본 계약의 어떠한 사항도, 적용 가능한 법원에서 임시적 금지를 청구하거나 중재 배상 결정을 집행할 양 당사자들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소송보다는 중재를 진행하는데, 이는 중재가 양 당사자들에 대한 구속력이 있고,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법률전문가가 중재를 하고, 1심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속한 분쟁해결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중재규정에 따르면 전세계 어디에서도 동일한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고, 언어도 영어를 사용

할 수 있으며, 현지 대리인이 아니라 국내 중재전문가를 선임하여 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반면 소송은 일방 당사자의 국가에서 하는 경우 그 나라 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며, 제3국에서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생소한 국가의 법원에서 그 나라의 법과 언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현지 법률대리인도 고용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다. 따라서 국제계약의 분쟁 해결은 주로 제3국에서 중재로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요 도시에는 각국의 중재원이 있는데, 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이들 중 한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서울에도 중재원이 있으나, 양 당사자들에 대한 유불리 정도가 비슷한 제3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홍콩, 비아시아 지역에서는 런던이나 파리가 주요 중재장소로 선택된다. 중재는 국제 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의 중재규정에 기초하기 때문에 중재장소에 관계없이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보장 받을 수도 있다. 어느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중재에서는 보통 영어를 사용한다. 중재인은 1명 또는 3명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중재인이 많으면 보다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할 수 있으나, 중재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나므로 이를 감안하여 중재인 수를 정할 필요가 있다.

양 당사자들이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그러한 중재는 최종적이면서도 양 당사자들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1회의 중재를 의미한다. 따라서 중재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하여도 중재 합의에 의한 구속력 때문에 부적법 각하된다.

중재 과정에서의 발언이나 논의사항은 모두 비밀로 유지되며,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한, 중재자는 중재의 존재 여부, 중재 내용, 중재 결과를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한편,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 국가의 법에 따라 각하되거나 중단되어 본안 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다. 다만, 중재결정이 있기 전까지 특정 행위 금지, 재산 처분 금지나 가압류와 같은 보전처분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재결정에 따른 집행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중재신청 전에 법원에 상대방에 대한 특정 행위 금지나 재산 처분 금지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한 후, 중재결정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른 집행을 법원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18. 일반 (GENERAL)

16. GENERAL

16.1 Headings

The headings used in this Agreement are for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only and are not intended to be a part of this Agreement or to affect the meaning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16. 일반

16.1 제목

본 계약에 사용된 제목은 양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본 계약의 일부로 의도된 것이 아니며 본 계약의 의미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 계약 각 조항에는 제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제목들은 개별 조항의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하여 표시하여 놓은 것일 뿐, 본 계약의 일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제목이 의미하는 내용과 해당 조항 본문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 조항 본문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제목이 의미하는 내용은 구속력이 없다. 해당 조항 본문의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도 그 조항의 제목에 따라 해석을 한다거나 그 제목이 의미하는 내용을 포함한다고 보아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실제 계약에서는 계약서 본문에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 하지 않은 채 조항의 제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의 해석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각 당사자가 각자의 주장을 고집하게 되고, 결국 분쟁 해결을 쉽지 않게 만들 뿐만 아니라 분쟁을 장기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16.2 Non-Assignment

The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hereto. Neither Party may assign the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y assignment by operation of law, order of any court, or pursuant to any plan of merger, consolidation or liquidation, shall be deemed an assignment for which prior consent is required and any assignment made without such consent shall be void and of no effect as between the Parties.

16.2 양도 금지

본 계약은 양 당사자들에게 구속된다.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을 양도할 수 없다. 법 작용, 법원 명령 또는 합병, 회사정리나 청산 계획에 따른 어떠한 양도도 사전 동의를 요구되는 양도로 간주하며, 그러한 사전 동의가 없는 양도는 무효이고 양 당사자들에게 효력이 없다.

본 계약서 샘플은 어느 일방 당사자도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도록 하였다. 국제공동연구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해당 당사자들이 공동연구에 반드시 필요하여 애초에 그러한 공동연구가 논의되어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제3자가 대신 참여하는 것은 그러한 공동연구의 의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는 권리의무의 양도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연구의 전부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것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어느 일방 당사자가 제3자에게 인수합병 되거나, 법률이나 법원에 의한 계약의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가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본 조항에 따라 상대방의 사전 동의를 필요하며, 그러한 사전 동의가 없이 계약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그러한 양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16.3 Non-Amendment

No amendment or change to the Agreement shall be valid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16.3. 개정 금지

본 계약에 대한 개정이나 변경은 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하여 서면으로 작성되고 서명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다. 다만,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가 협의하여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하여야만 해당 변경 사항이 효력을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16.4 Non-Waiver

A delay or omission by either Party to exercise any right or power under the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a waiver thereof. A waiver by either of the Parties of any of the covenants to be performed by the other Party or any breach thereof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a waiver of any succeeding breach thereof or of any other covenant in this Agreement.

16.4 권리 불포기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권리나 권한의 행사를 지체하거나 누락한 것은 그러한 권리의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상대방에 의해 이행되어야 하는 약정이나 그 약정 위반에 대한 다른 일방 당사자의 권리 포기가, 그 약정에 대한 또 다른 위반 또는 본 계약의 다른 약정 위반에 대한 권리 포기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나 권한을 행사하지 않거나 행사를 지체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권리나 권한을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본 계약의 어떤 약정을 유예하였거나 면제하였다고 하여 그 약정이나 다른 약정을 재차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를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서도 안 된다. 따라서 본 계약의 각 규정에 의한 권리나 권한은 그 당시의 행사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에 반복되어 발생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언제나 상대방에게 다시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16.5 Entire Agreement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appendices, schedules, exhibits, referred to therein and attached thereto,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whether written or oral, with respect to such subject matter.

16.5 완전 합의

본 계약에 언급되거나 첨부된 부록, 별지, 제출서류를 포함한 본 계약은, 본 계약에 포함된 주제에 관한 양 당사자들간의 완전한 합의이며, 그러한 주제에 관한 이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를 대신한다.

본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양 당사자들 간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여 왔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나 본 계약은 그러한 협상 과정에 의하여 합의된 최종적인 결과물이므로, 이전에 합의된 구두나 서면상의 약정에 우선하고 그러한 약정을 대신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본 계약과 이전의 약정이 모두 유효하게 되어 만일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는지 불분명하게 된다.

따라서 이전의 약정이 본 계약과 상충된다거나 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전혀 의미가 없으며, 본 계약에서 합의되어 명시된 내용만이 양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16.6 Severability

In the event that any provision of the Agreement conflicts with the law under which the Agreement is to be construed or if any such provision is held invalid by a competent authority, such provision shall be deemed to reflect as nearly as possible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he remainder of the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16.6 일부 무효

본 계약의 어느 조항이, 본 계약의 해석 기준이 되는 법과 충돌하거나 그러한 조항이 관계당국에 의하여 무효라고 선언되는 경우, 그러한 조항은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양 당사자들이 애초 의도하였던 사항에 가능한 한 가깝게 반영하도록 한다. 본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

본 조항은, 본 계약의 일부분이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관계 기관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해당 조항은 일단 무효로 보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양 당사자들이 원래 의도하였던 내용을 최대한 살펴보는 의미에서 작성되었다. 즉, 해당 조항 자체는 효력이 없게 되었으나,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양 당사자들이 합의한 본래 취지를 살려서 그 의도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최대한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한편, 무효로 된 조항 외의 나머지 계약 부분은 모두 유효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무효가 됨으로써 전체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면, 나머지 부분도 결국 의미가 없게 되어 실질적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16.7 Counterparts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one or more counterparts, and each of which shall be deemed to be an original, and all of which shall constitute one and the same instrument.

16.7 부분

본 계약은 하나 이상의 부분으로 이행될 수 있고, 각 부분은 원본으로 취급되며, 하나의 동일한 문서로 본다.

본 계약의 부분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으며, 각 부분은 모두 원본과 동일한 것으로서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보면 된다.

19. 계약의 완성 및 서명

Accepted and agreed by the following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s of the Effective Date:

KAI

AXU

Date:

Date:

Name:

Name:

Title:

Title:

Signature: _____

Signature: _____

효력발생일자로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다음 대표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합의됨.

ABC

XYZ

일시:

일시:

성명:

성명:

직책:

직책:

서명: _____

서명: _____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들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계약을 마무리한다. 양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이 각자 서명한 일시, 본인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완성된다.

한편, 본 계약서 앞 부분에 기재된 효력발생일(Effective Date)과 위 서명일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 만일 서명일에 효력을 발생시키고자 한다면 효력발생일을 서명일과 동일하게 변경하거나, 아니면 본 계약서 앞 부분에서 효력발생일을 양 당사자들 중 마지막 당사자가 서명한 날로 변경할 수도 있을 것이다.

Ⅲ. 비밀유지 계약서 설명

1. 당사자 (Parties)

This NON-DISCLOSUR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and made effective as of the last date on which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Parties signs below (“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Korean ABC Institute*]

12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138-050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I”)

and

[*American XYZ University*]

456 Main Street
New York City, NY 12345, US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XU”).

KAI and AXU wi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본 비밀유지계약(이하 “계약”)은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들이 아래 서명한 마지막 날짜(이하 “효력발생일”)를 기준으로 한국 ABC 연구원 (이하 “KAI”)와 미국 XYZ 대학교 (이하 “AXU”)간에 체결되었다.

KAI 및 AXU를 이하 각자 “당사자”, 합쳐서 “양 당사자들”이라고 한다.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당사자들이 모여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고,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자료, 기술 등을 부득이하게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일단 공개된 정보, 자료, 기술 등을 다시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그러한 정보, 자료, 기술 등을 자발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한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그러한 정보, 자료, 기술 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

게 공개하지 말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결국 정보, 자료, 기술 등을 공개한 자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중요한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대부분 비밀유지계약(non-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한다. 즉, 협상 과정에서 공개되거나 제공되는 정보, 자료, 기술 등은 비밀정보에 해당되고, 이를 협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의 계약을 협상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들 간에 체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비밀정보를 안전하게 공개하거나 제공할 수 있고, 그만큼 협상이 성공에 이를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해 협상을 시작할 때에도 이러한 비밀유지계약을 반드시 체결할 필요가 있는데, 비밀유지계약은 그 내용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표준계약서의 형태로 만들어 놓으면 추후 반복하여 활용하기에 편리하다.

2. 비밀정보(Confidential Information)의 정의

1.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s, materials and know-how, shall be considered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 (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with “confidential,” “proprietary” or some similar indication marked;
- (ii) information that is expressly advi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be confidential in a written or tangible form;
- (ii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orally or otherwise than in tangible form provided that it must be identified as “confidential” at the time of disclosure and a written summary must be provided to the receiving Party within twenty (20) days thereafter; or
- (iv) information that would be reasonably constru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receiving Party.

1. 비밀정보

문서, 자료, 노하우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는 다음의 정보는 본 계약에 따라 비밀 정보로 본다.

- (i) “기밀”, “사유”, 그 밖의 유사한 기재가 표시되어 공개된 정보
- (ii) 공개 당사자가 서면 또는 유형의 형태로 기밀임을 명시한 정보
- (iii) 구두 또는 유형의 형태 외의 형태로 공개된 정보로서, 공개 당시에 “기밀”이라고 밝혀져야 하고, 그 후 20일 이내에 제공받는 당사자에게 서면 요약 문서가 제공되어야 함.
- (iv) 여러 정황상 제공 받는 당사자에 의하여 기밀정보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정보

앞서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당사자가 유지해야 할 “비밀”이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그래야만,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상대방이 해당 정보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비밀정보”의 정의는 계약마다 대동소이하다. 즉, (i) “기밀(Confidential)”, “사유(Proprietary)” 또는 그와 유사한 표시

가 찍혀 있거나, (ii) 다른 서면 수단을 통해서 명시적으로 기밀이라고 알려졌거나, (iii) 구두나 비서면의 형태로 공개되었으나 공개 당시 기밀이라고 밝힌 후 다시 서면으로 알렸거나, (iv) 정보를 받는 일방 당사자가 정황상 기밀이라고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정보에 해당되면 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 비밀정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가 부족하다거나, 보다 강화된 절차에 따라 비밀정보를 공개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비밀정보의 정의를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3. 계약기간

2. TERM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Effective Date, unless terminated earlier by the Parties.

2. 기간

본 계약은 양 당사자들에 의해 조기 해지되지 않는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공개되는 비밀정보에 적용된다.

비밀유지계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기간과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기간은 반드시 같은 것은 아니다. 즉, 비밀유지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상대방에게 제공된 비밀정보에 대해서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고, 그러한 비밀유지의무를 지속해야 하는 기간은 계약기간과 별도로 정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일 비밀유지계약이 만료하기 직전에 상대방에게 어떤 비밀정보가 제공되었는데 비밀유지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비밀유지의무가 종료된다면, 해당 비밀정보에 적용되는 비밀유지기간은 너무나 짧게 된다. 이는 비밀유지계약에 따라 공개된 비밀정보마다 다른 비밀유지기간이 적용된다는 의미이므로 나중에 비밀정보를 공개할수록 불리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의 기간은 협상 기간 또는 본 계약 체결 전까지로 짧게 정하는 대신, 일단 공개된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기간은 공개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몇 년 간 길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밀유지계약은 보통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위한 본 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유지되고, 본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는 본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가 그 이후에 공개되는 비밀정보에 부과되도록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비밀유지계약 기간은 본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 기간에 맞추어 협상이 지연되는 것을 감안하여 그보다 약간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협상이 오래 지속되어야 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보통 1년 내외로 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중도에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에 비밀유지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단서를 추가할 수도 있다.

4. 비밀유지기간

3. PERIOD OF CONFIDENTIALITY

The obligations and du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receipt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by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s aforementioned obligations and duties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3. 비밀유지기간

본 계약에 따른 의무와 임무는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를 수령한 후부터 [5년 간] 지속된다.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앞서 언급된 의무와 임무는 본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어도 존속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밀유지계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과 비밀유지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은 별개로 정해질 필요가 있다. 비밀유지계약은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기간 동안 적용되도록 하고, 비밀유지의무는 비밀정보가 제공된 시점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이 만료되거나 중간에 해지되어 효력을 상실한다 하여도 비밀유지의무는 존속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추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비밀유지계약이 효력을 상실하면서 그 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도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해석되어 양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

비밀유지기간은 제공되는 비밀정보의 발전 속도, 중요도, 투입된 개발기간 및 비용, 개발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는데, 특히 첨단 기술과 같이 발전 속도가 빨라서 1~2년만 지나도 가치가 없는 정보가 되는 경우에는 3~5년 내외, 발전 속도가 느린 기술이나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길게 5~10년 내외로 비밀유지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비밀유지의무를 영원히 부과하는 경우도 없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추후 비밀유지의무가 부메랑처럼 작용하여 다른 사업 활동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협상 과정에서 제공 받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비밀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다

큰 영업 활동을 위해 일부가 부득이하게 공개되어야 할 경우에 비밀유지의무 때문에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리 중요하지 않은 비밀정보를 협상 과정에서 제공 받았다는 것만으로 그와 관련된 다른 중요한 영업 활동이 제약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무한정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자신의 비밀정보를 확실히 보호하는 좋은 수단처럼 보일 수 있으나, 뒤집어 생각하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래 영업 활동이나 연구개발 활동에 장애가 될 가능성도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5. 비밀유지의무 및 임무

4. OBLIGATIONS AND DUTIES OF CONFIDENTIALITY

The receiving Party, who is provided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the disclosing Party, shall be obliged:

- (i) to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and engaging in an actual or potential mutually agreeable or negotiable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rpose”);
- (ii) not to disclose for any other purposes any part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ts own affiliat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urpose under this Agreement, unless expressly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disclosing Party;
- (iii) to limit dissemination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only its employees who are required to hav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under this Agreement; and
- (iv) not to reverse engineer, disassemble or decompile or otherwise attempt to decipher the design or function of any prototypes, software or other tangible objects which embody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4 비밀유지의무 및 임무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제공받는 당사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i) 해당 비밀정보를 양 당사자들 간에 실제 또는 가능성 있는 상호 협의나 협상 가능한 공동연구개발 관계를 평가하고 그러한 관계에 착수할 목적(이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함.
- (ii) 공개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 승인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따른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관계사를 포함하되 한정되지 않음)에게 해당 비밀정보의 어떠한 부분도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공개하지 않아야 함.
- (iii) 본 계약에 따른 목적을 위해 비밀정보를 보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업원에게만 해당 비밀정보의 전파를 제한해야 함.
- (iv) 해당 비밀정보를 구현하는 어떠한 시제품, 소프트웨어 또는 그 밖의 유형물의 디자인 또는 기능을 역설계, 분해, 디컴파일, 또는 그 밖의 다른 해독 시도를 하지 않아야 함.

비밀유지계약에서 부과되는 비밀유지의무는 공동연구개발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 비밀정보가 제공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밀유지의무의 종류도 달라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는 비밀정보를 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비밀유지계약에서는 공동연구관계를 평가하고 그러한 관계에 착수할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직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기 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제공된 비밀정보를 역설계(reverse engineer), 분해, 디컴파일(decompile) 등을 금지함으로써, 상대방의 비밀정보만 입수할 목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가 비밀정보 입수 후 협상을 중단하는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계약 협상 단계에서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부과하여야 할 다른 의무사항이 있다면 양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추가, 수정할 수 있을 것이다.

6. 비밀성 유지

5.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The receiving Party shall take at least those measures that it takes to protect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but shall exercise no less than a reasonable degree of care. Furthermore the receiving Party shall ensure that its employees and contractors who have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isclosing Party have duties of confidentiality substantially the same as or similar to the provisions hereof, prior to any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o such employees and contractors.

5. 비밀성 유지

제공 받은 당사자는 적어도 유사한 성질을 가진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을 취해야 하나, 합리적인 보호 수준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제공 받은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진 자신의 종업원과 수급인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공개하기 전에, 여기서의 규정과 실질적으로 같거나 유사한 비밀유지의무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후에는 해당 비밀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소극적 의무뿐만 아니라, 제공 받은 비밀정보가 계속 비밀로 유지되도록 관리하는 적극적 의무도 부과할 필요가 있다. 공동국제연구개발 계약에서는 이러한 적극적 의무도 비밀유지의무 중 하나에 포함하여 규정하였으나, 비밀유지계약에서는 별도의 조항으로 분리하여 규정함으로써 보다 자세하게 기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의무를 더 강조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한편, 비밀유지를 위한 조치는 제공 받은 비밀정보를 지키기 위해 극도의 보안 시설을 갖추거나 경비 인력을 두는 등의 특별한 노력을 요하는 조치가 아니라, 비밀정보를 제공 받은 당사자 자신이 본인의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 정도는 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일부 당사자의 경우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거나 설령 보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으므로, 적어도 합리적인 보호 수준 이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반드시 추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를 구속하며 각 당사자에게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각 당사자의 종업원과 수급인은 본 비밀유지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직접 부과되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각 당사자의 종업원과 수급인은 각 당사자가 책임지고 그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여 관리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에게 부과되는 비밀유지의무도 본 비밀유지계약에서 정하는 것과 같거나 유사한 정도가 되도록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예외

6. EXCEPTIONS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information that:

- (i) was already in the receiving Party's possession before disclosure by the disclosing Party;
- (ii) is or becomes a matter of public knowledge through no fault of the receiving Party;
- (iii) is rightfully received by the receiving Party from a third party without a duty of confidentiality to the disclosing Party;
- (iv) is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a third Party without a duty of confidentiality;
- (v) is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receiving Party without reference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ing Party provides with;
- (vi) is legally required (by a court order, oral questions, interrogatories, requests for information, subpoena, civil investigative demand or similar process) to disclose, provided the receiving Party gives a prior written notice to the disclosing Party and cooperates with the disclosing Party in obtaining appropriate protection of such information; or
- (vii) is disclosed by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disclosing Party's prior written approval.

6. 예외

비밀정보는 다음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 (i) 공개 당사자에 의한 공개 전이 이미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한 정보
- (ii) 제공받은 당사자의 잘못 없이 공공의 지식이거나 그렇게 된 정보
- (iii) 공개 당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없는 제3자로부터 적법하게 제공받은 정보
- (iv) 비밀유지의무 없이 공개 당사자에 의해 제3자에게 공개된 정보
- (v) 공개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참고하지 않고 제공받은 당사자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 (vi) (법원의 명령, 구두 질문, 심문, 정보 요청, 소환, 민사 심리 요구 또는 유사한 절차에 의해) 법적으로 공개가 요구되는 정보로서, 제공받은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에게 사전 서면 통지를 하여야 하고, 공개 당사자가 그러한 정보의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공개 당사자와 협력하여야 함.
- (vii) 공개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와 함께 제공 받은 당사자에게 공개된 정보

형식적인 비밀정보의 정의에 따르면 비밀정보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게까지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를 그러한 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대중과 비교하여 도리어 역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비밀정보에 해당되지만 실질적으로 비밀성을 상실한 정보를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그러한 부당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7가지 예를 들었는데, 이 외에도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8. 비밀유지계약의 제한 사항

7. LIMITATION OF AGREEMENT

(a) No right or license is granted or conveyed under this Agreement by the disclosing Party to the receiving Party under any recognized intellectual or industrial property righ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copyright, patent, mask work right, trade secret, or trademark owned by or licensed to the disclosing Party.

(b)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creating a relationship of representatives, partners, agents or joint ventures between the Parties for any purpose whatsoever. Neither Party shall have the authority or power to bind the other Party or to contract in the name of or create a liability against the other Party in any way or for any purpose.

7 계약의 제한

(a) 공개 당사자가 소유하거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저작권, 특허, 반도체배치설계권, 영업비밀, 상표를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않는 어떠한 인지 가능한 지식재산권 또는 산업재산권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라이선스도 본 계약에 따라 공개 당사자로부터 제공 받는 당사자에게 부여되거나 전달되지 아니한다.

(b) 본 계약이 어떠한 사항도 그 어떠한 목적으로도 양 당사자들 간에 대표자, 파트너, 대리인 또는 합작투자 관계를 형성한다고 해석되지 아니한다. 어느 당사자도 그 어떤 방법이나 목적으로도 상대방을 구속하거나, 상대방의 명의로 계약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책임을 부과할 권한이나 힘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

비밀유지계약은 당사자들이 서로 주고받는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협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구속하는 목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이므로,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그 외의 사항은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거나, 공개되는 비밀정보를 사용할 권리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거나, 관련되는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사용할 권리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는 등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본 조항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와 같은 권리나 라이선스가 상대방에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조항이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비밀정보를 공개하는 당사자가 큰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본 조항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선언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서로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려는 목적으로 포함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부 당사자는 비밀유지계약이나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많지 않다거나 법률관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오해를 불식시키고 분쟁을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항과 같은 내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

9, 비밀정보 반환

8. RETUR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ll copies thereof, remain as the property of the disclosing Party. Up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disclos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ly return to the disclosing Party all documents, presentations, and other tangible item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urnished by the disclosing Party and all copies thereof, or at the request of the disclosing Party, certify in writing that all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all copies, has been destroyed.

8. 비밀정보 반환

비밀정보와 그 모든 사본은 공개 당사자의 재산으로 남는다. 공개 당사자가 서면 요청하면 제공 받는 당사자는 공개 당사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모든 문서, 프레젠테이션, 그 밖의 유형물 및 그 모든 사본을 공개 당사자에게 즉시 반환하거나, 공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사본을 포함한 그 모든 비밀정보를 폐기하였음을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상대방에게 제공된 비밀정보는 보통 비밀유지계약이 해지된 경우 공개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공개 당사자가 허락하는 경우 반환 대신 폐기하도록 하고 서면으로 보고 또는 증명하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협상이 중간에 결렬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개된 비밀정보를 모두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비밀유지계약의 명시적 해지 여부와 관계없이 비밀정보를 공개한 당사자가 요구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제공 받은 비밀정보 및 그 사본을 모두 반환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개 당사자의 요청, 비밀유지계약의 해지, 그 밖의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상대방은 공개 당사자의 요청에 의하거나 아니면 자동적으로 공개 당사자로부터 제공 받은 비밀정보 및 그 사본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이러한 반환 규정이 비밀유지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협상이 중간에 결렬되거나 비밀유지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반환이 당연하다거나 자동적인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이미 제공된 비밀정보의 반환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

10. 일반

9. GENERAL

(a) Each Party shall adhere to all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rules relating to the export of technical data, and shall not export or re-export any technical data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disclosing Party.

9. 일반

(a) 각 당사자는 기술 데이터의 수출과 관련된 모든 적용 법률, 규정, 규칙을 준수해야 하고, 공개 당사자의 서면 허락 없이는 어떠한 기술 데이터도 수출하거나 재수출해서는 안 된다.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에서도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국가가 통제하는 기술의 교류이다. 우리나라나 미국 모두 첨단기술의 해외 반출에 민감하며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 없이는 수출이 금지되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계약 협상을 하는 단계에서도 그러한 민감한 기술 자료들이 공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술자료가 필요한 국제공동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b) All additions or modifications to this Agreement must be made in writing and must be sign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b) 본 계약에 대한 추가나 변경은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각 당사자의 적법한 권한을 가진 대표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계약서의 내용을 추가, 변경, 삭제하는 것은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가 합의하여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을 변경하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사항이다 하더라도 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약 변경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각 당사자로부터 그러한 계약 변경의 권한을 적법하게 부여 받은 자가 직접 서명하여야 할 것이다.

(c)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AS IS” and without any warranty, express, implied or otherwise, regarding its accuracy, completeness or performance.

(c) 모든 비밀정보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되며, 정확성, 완전성 또는 성능에 대하여 명시적, 묵시적 또는 그 어떠한 방식으로도 보장하지 아니한다.

제공되는 비밀정보는 당사자들이 기대하는 정확성, 완전성, 성능 등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바람직하겠으나, 공개 당사자는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특별한 보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아무리 정확한 자료를 만든다 하더라도 오류, 오타, 착오, 실수 등이 전혀 없을 수 없고, 완벽한 자료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다고 100% 장담하기 어려우며, 설령 외부 공인기관으로부터 성능을 검증 받았다 하더라도 성능검사에 오류가 있거나 검사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등 그 성능을 보장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일 위와 같은 사항을 공개 당사자에게 보장하도록 요구한다면, 공개 당사자는 비밀정보 제공을 아예 거부할 가능성이 높고, 협상도 시작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비밀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장래의 불확실하고 불확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만들어진 실재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러한 비밀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어떠한 보장도 할 수 없다는 책임부인 규정을 계약에 반드시 포함시킴으로써 모든 당사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d) Any failure to enforce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ill not constitute a waiver thereof or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d) 본 계약의 어떠한 조항을 집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 또는 본 계약의 다른 조항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아니한다.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행사를 적시에 하지 못하였다고 반드시 그러한 권리 행사를 포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권리 행사의 필요성이 없었다거나, 권리를 행사할 시간적, 경제적, 인적, 법적, 그 밖의 다른 여건이 되지 못하였거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는 등 해당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러한 사유가 있었다고 하여 해당 권리를 다시는 행사할 수 없도록 한다거나, 다른 권리까지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면 부당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본 조항이 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권리 불행사가 권리의 포기나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본 조항도 다른 많은 조항들과 같이 선언적인 의미에서 계약에 포함되는 것이고, 각 당사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ngland], without giving effect to principles of conflict of laws.

(e) 본 계약은 법률 충돌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고 영국법에 따라 해석한다.

계약의 적용, 해석, 집행 등의 기준이 되는 법을 준거법(governing law 또는 applicable law)이라고 하는데, 어느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을 준거법으로 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보통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이고, 미국은 판례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이기 때문에 그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제3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정한다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의 당사자들이 선호하는 국가가 서로 다를 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은 한국법과 유사한 체계를 가지는 일본법이나 독일법을 선호하는 반면, 미국은 영미법계인 영국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준거법은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가능한 한 공정하게 정할 필요가 있는데,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우선 영국법으로 기재하여 놓기는 하였으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변경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의 설명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f)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1) or three (3)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arbitration hearing shall take place in [*London*] and be held in English.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each Party may immediately bring a proceeding seeking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in a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which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 final award is made in the arbitration.

(f) 본 계약으로부터 또는 본 계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국제상공회의소 중재 규정에 따라 최종 해결되며, 위 규정에 따라 1명 또는 3명의 중재인이 임명된다. 중재는 런던에서 개최되고 영어로 진행된다. 앞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자는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 가처분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가처분 구제는 중재에서 최종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준거법과 함께 당사자들 간에 견해 대립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 바로 분쟁 해결 방법과 장소이다. 국내 계약에서는 주로 소송과 중재를 선택하는 비율이 비슷하나, 국제 계약에서는 주로 중재로 분쟁을 해결하는 편이다.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할 경우 특정 국가의 법원에서 그 나라 소송법에 따라 그 나라 언어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고, 그 나라에서 인정된 법률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즉, 분쟁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참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또한 어느 한 당사자의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불리하므로 제3국에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문제는 여전히 발생한다.

반면 중재는 세계에서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중재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예측 가능할 뿐만 아니라 대응도 보다 수월하다. 또한 각 나라마다 중재원을 두고 있어 당사자들이 거리, 제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장소를 고를 수 있고, 중재자도 중재 규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선택할 수도 있으며, 대리인도 각 당사자 국가의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도 수월하고 법률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소송보다 선호된다.

중재 규정은 각 국가 중재원의 중재규정을 따를 수도 있으나, 국제상공회의소 중재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모든 당사자들에게 공평하여 많이 선호되고 있다.

중재 장소는 어느 일방 당사자의 국가보다는 제3국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럽에서는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홍콩이 주요 중재지로 꼽힌다. 본 계약서 샘플에서는 런던으로 기재하여 놓았으나, 당사자들이 협의하여 수정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국제공동연구개발계약서의 설명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g)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with respect to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hereunder and supersedes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agreements concerning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g) 본 계약은 여기서의 약정에 따라 공개된 비밀정보에 관하여 완전한 계약을 이루고 있으며, 그러한 비밀정보에 관한 종전 또는 현재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 합의를 대체한다.

비밀유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여러 차례의 협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한 과정에서 여러 합의사항이 있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게 되면 그 전까지 협의되었고 합의되었던 사항은 본 계약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한 계속 효력을 유지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 비밀정보에 관하여 서로 다른 합의가 있게 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합의가 상충하게 되면 어느 쪽을 적용할 것인지도 문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밀유지계약을 최종적으로 체결하였다면 본 조항을 반드시 포함함으로써 그러한 이중 합의 또는 합의 상충의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11. 계약의 완성 및 서명

Accepted and agreed by the following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s of the Effective Date:

KAI

AXU

Date:

Date:

Name:

Name:

Title:

Title:

Signature: _____

Signature: _____

효력발생일자로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다음 대표자들에 의하여 인정되고 합의됨.

ABC

XYZ

일시:

일시:

성명:

성명:

직책:

직책:

서명: _____

서명: _____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들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는 표현으로 계약을 마무리한다. 양 당사자들의 대표자들이 각자 서명한 일시, 본인의 성명과 직위를 기재하고, 마지막으로 이 계약에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완성된다.

IV. 국제공동연구 계약서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THIS IS A SAMPLE COPY OF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BETWEEN KOREAN ENTITY(IES) AND US ENTITY(IES), WHICH NEEDS TO BE MODIFIED APPROPRIATELY AS AGREED BY THEM.

This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dated as of

[*September 30, 2015*]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ffective Date”),

is made and entered into by and between

[*Korean ABC Institute*]
12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138-050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I”)

and

[*American XYZ University*]
456 Main Street
New York City, NY 12345, US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XU”).

KAI and AXU wi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WHEREAS

(한국 연구소 소개)

KAI is a non-profit research institute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with extensive experienc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areas of electronics and communications.

(미국 학교 소개)

AXU is a non-profit educational institute which is university for education and research established under the laws of the State of New York, USA.

(본 계약 목적)

The Parties to this Agreement wish to collaborate on a research project entitled “Artificial Intelligent Unmanned Aviation Vehicle” which is of mutual interest and benefit to the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esearch”), and now desire to enter into this Agreement for cooperation and coordination in conducting the Research.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mutual representations, warranties and covenants contained herein and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of which is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hereto agree as follows:

1. DEFINITIONS

Words or expressions used in this Agreement shall have the meanings set forth below unless it is expressly stated to the contrary or any other meaning is apparent in the context in which such words or expressions are used.

1.1 “Intellectual Property” or “IP” means any discovery, invention, formulation, know-how, method, technological development, enhancement, modification, improvement, work of authorship, computer software and documentation thereof, data or collection of data, whether patentable or not, or susceptible to copyright or any other form of legal protection.

1.2 “Background IP” means IP which exists as of the Effective Date, is already owned or controlled by a Party hereto, and is not created or invented under this Agreement.

1.3 “Know-how” means unpatented technical information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information relating to inventions, discoveries, concepts, methodologies, models, research, development and testing procedures, the results of experiments, tests and trials, manufacturing processes, techniques and specifications, quality control data, analyses, reports and submissions) that is not in the public domain.

1.4 “Research Results” means IP which is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1.5 “Research Director” means the person(s), designated by either a Party or the Parties, who wi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coordinating and supervising the Research in its entirety under this Agreement.

1.6 “Affiliate” means any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ity which,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s, is controlled by, or is under common control with the Party on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As used in this definition, the term “control” means possession of the power to direct, or cause the direction of the management and policies of a corporation or other business entity whether through the ownership of voting securities, by contract or otherwise.

1.7 “Third Party” mean any individual, corporation or business entity other than the Parties.

2. IMPLEMENTATION OF THE RESEARCH

(연구 범위, 역할 등)

2.1 Scope

(연구범위는 별지로 기재)

The Parties agree to use reasonable efforts to perform the Research as described in Schedule A (Scope of Research). However, the Parties may add, modify or remove the description, in whole or in part, of the Research and expand or reduce the scope of the Research with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writing.

2.2 Roles and Responsibilities

(각 당사자별 역할과 임무는 별지로 기재)

The Parties shall undertake roles and responsibilities as specified in Schedule B (Roles and Responsibilities). However, the Parties may add, modify or remove the roles and/or responsibilities in whole or in part only with mutual consent of the Parties in writing.

2.3 Permits and Approval

(본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인허가는 각 당사자 책임)

Each Party shall be fully responsible for promptly obtaining all necessary consents, approvals, permits or authorization from government and/or relevant authorities for the Party to perform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In the event that the other Party's assistance or cooper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co-application or documentation, is required by laws or regulations in the process of such consents, approvals, permits or authorization, the other Party may assist or cooperate with the Party to the reasonable extent upon request.

3. MANAGEMENT OF THE RESEARCH

(공동연구 운영 및 관리)

[Option 1] In case of two Parties without management organization

(별도의 운영기구가 필요 없는 경우)

3.1 General Structure

(각 당사자가 지정한 연구책임자들이 협의하여 관리)

Each Party shall appoint its own Research Director to conduct and supervise the Research on its en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in Article 2.2. Research Directors of the Parties shall communicate with each other regularly or irregularly to coordinate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A in Article 2.1.

3.2 Research Directors

(연구책임자들이 논의할 사항)

Research Directors of the Parties shall be responsible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on a regular and irregular basis in order to do the followings together:

- (i) to exchange and share information of the Research in progress;
- (ii) to discuss and resolve any issues or concerns in conducting the Research;
- (iii) to make a decision on the issues or concerns if necessary for the Research to be continued; and
- (iv) to do other things necessary for further coordination of the Research.

3.3 Escalation

(문제 미해결 시 경영진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상부 보고, 그래도 안 되면 중재)

If Research Directors are not 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issues concerning the Research or this Agreement within [*fourteen (14) days*] after the issues are raised by

Research Director(s), the issues shall be referred to the president, CEO or other senior management of each Party in an attempt to resolve the issues within [*fourteen (14) days*] from the referral. In the event of failure to resolve the issues at the senior management level, the issues shall be resolved by means of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Option 2] In case of two or more Parties with management organization

(별도의 운영기구가 필요한 경우)

3.1 General Structure

(각 당사자가 선정한 연구책임자들로 운영위원회 구성)

(a) Each Party shall appoint its own Research Director to conduct and supervise the Research on its end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in Article 2.2.

(b) The Parties shall set up and run the Steering Committee for managing all matters and issues that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performance of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Research Director of each Party shall be a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and participate in the meetings of the Steering Committee on a regularly or irregularly basis by means of face-to-face meeting, tele-conference, video-conference or the like.

3.2 Steering Committee

(운영위원회 업무)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responsible and obliged to:

- (i) exchange and share information of the Research in progress;
- (ii) discuss and resolve any issues or concerns in conducting the Research;
- (iii) make a decision on the issues or concerns if necessary for the Research to be continued; and
- (iv) do other things necessary for further coordination of the Research.

3.3 Quorum

(의사정족수는 과반수 출석, 대리인 허용)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not deliberate and decide validly unless a majority of the members of the Steering Committee participates in the meeting in accordance with Article 3.1. A member may be represented by a duly authorized proxy or agent at the meeting.

3.4 Voting Rules

(의결은 출석 과반수 (단, 출석자 관련 안건 의결 시 출석자에서 제외))

Each member of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have one (1) vote. All or any decisions of the Steering Committee shall be made by a majority of votes of the members present or repres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3. However, if a specific issue to be decided at the meeting by the Steering Committee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a Party to this Agreement, the Party shall be considered not present or represented in making a decision on the specific issue.

3.5 Escalation

(문제 미해결 시 경영진끼리 해결할 수 있도록 상부 보고, 안 되면 중재)

If the Steering Committee is not able to reach agreement on any issues concerning the Research or this Agreement within [*two (2)*] consecutive meetings after the issues are raised at the meeting of the Steering Committee, the issues shall be referred to the president, CEO or other senior management of each Party in an attempt to resolve the issues within [*thirty (30) days*] from the referral. In the event of failure to resolve the issues at the senior management level, the issues shall be resolved by means of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

4. FINANCIAL CONTRIBUTION TO THE RESEARCH

(연구비)

[Option 1] In case of bearing its own costs for Research

(연구비 각자 부담의 경우)

4.1 Costs for Research

(연구비 각자 부담 원칙)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of participating in and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4.2 Indemnification

(다른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연구비 부담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 없음)

Each Party shall indemnify the other Party and keep it indemnified against all and any refund, repayment or payment that the Party is required to make due to a Third Party in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Option 2] In case of supporting costs for Research

(연구비를 일방이 제공하는 경우)

4.1 Costs for Research

(연구비 각자 부담 원칙)

Each Party shall bear its own costs of participating in and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4.2 Support of fund for Research

(일방이 제공하기로 한 연구비가 있으면 그에 따름)

Notwithstanding Article 4.1, a Party who is responsible for supporting fund shall provide all or part of fund for the Research for or make payment due to the other Party in accordance with Schedule C (Financial Contribution or Payment Plan).

4.3 Penalty for delay

(연구비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연손해금 부과)

If a Party fails to provide fund or make payment, in whole or in part, in accordance with Schedule C in Article 4.2, the other Party may charge interest as a penalty for delay on the amount outstanding on a daily basis at the rate of [*four (4) percent*] per year, calculated from the next day of due date in accordance with Schedule C to the actual date of payment.

4.4 Indemnification

(제공하기로 한 연구비 외에 상대방의 다른 연구비 부담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 없음)

Notwithstanding Articles 4.2 and 4.3, each Party shall indemnify the other Party and keep it indemnified against all and any refund, repayment or payment that the Party is required to make due to a Third Party in performing the Research in accordance with Schedule B.

5. 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5.1 Ownership of IP

(소유권)

(a) Background IP

(기존 IP는 각자 소유)

This Agreement shall not affect the ownership of the Background IP that each Party owns as of the Effective Date of this Agreement. To avoid any doubt, each Party owns

and will continue to own all right, title and interest in and to all of its own Background IP which is not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unless expressly stated otherwise herein.

(b)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각자 개발한 IP는 각자 소유)

All and any Research Results that are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solely by one or more employees (including professors, students, scholars or consultants, whether full-time or part-time) of a single Party shall be solely owned by the Party.

(c)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공동으로 개발한 IP는 공동 소유)

All and any Research Results that are developed or being developed under this Agreement jointly by one or more employees (including professors, students, scholars or consultants, whether full-time or part-time) of a Party and those of the other Party shall be jointly owned by the Parties involved with the Research Results. Each joint owner shall have an equal interest in and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unless agreed otherwise by all of the joint owners.

5.2 Protection of IP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a) Background IP

(기존 소유 IP는 각자 보호 책임)

The owner of Background IP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aking all necessary actions, legally or practically, to protect the Background IP such as application, prosecu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P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b)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각자 개발한 IP도 각자 보호 책임. 단, 비용 부담하면 특정 국가에서 지재권 공유 제안 가능)

The owner of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b), shall be solely responsible for taking all necessary actions, legally or practically, to protect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such as application, prosecu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P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However, the other Party may request to jointly own the IP rights to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in a certain country, provided that the other Party pays for all

the expenses (not including litigation costs for infringement, nullity, etc.) to apply for, prosecute, register and maintain the IP rights to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in the certain country.

(c)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공동 개발한 IP는 공동으로 비용 부담하여 보호 책임. 공유자가 출원 원하지 않으면 다른 공유자가 비용 부담하여 지재권 단독 소유 조건으로 출원 가능)

The joint owners of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c), shall be jointly responsible for taking all necessary actions, legally or practically, to protect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such as application, prosecution, registration and maintenance of IP righ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atents. All the expenses required for protection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cluding litigation costs for infringement, nullity, etc.) shall be shared by all the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 proportion with the interest or share of each joint owner in or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However, if some of the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are not interested in seeking a legal protection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 a certain country, the other joint owners of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may file an application for IP rights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at the expense of the other joint owners only, on the condition that the other joint owners are the sole owners of the IP rights to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in the certain country.

5.3 Use of IP and Grant of License

(IP 사용 및 라이선스 부여)

(a) Background IP

(비상업적으로 기존 IP 사용 허락. 그 외 목적은 상업 라이선스 필요)

Each Party shall grant to the other Party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Background IP solely for non-commercial purpo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and utilizing the Research Results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any other purposes, the Background IP is not allowed to use whatsoever, unless the owner of the Background IP grants to the other Party a separate commercial license to use it on a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market.

(b)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단독 사용 가능, 상대방은 비상업적으로 사용 허락. 그 외 목적은 상업 라이선스 필요)

The owner of Research Results, developed solely by a single Party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b), shall have the right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license or otherwise dispose of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at its own discretion without the consent of, without accounting to, and without any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 Furthermore, the owner of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shall grant to the other Party a non-exclusive, non-transferable, non-sublicensable, royalty-free license to use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for non-commercial purposes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For any other purposes,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are not allowed to use whatsoever, unless the owner of the solely owned Research Results grants to the other Party a separate commercial license to use it on a reasonable terms and conditions on the market.

(c)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공동 소유 IP는 상대방 허락, 보상 없이 사용 가능.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무조건 동의)

The joint owner of the Research Results, developed jointly by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5.1(c), shall have the right, without the consent of, without accounting to, and without any compensation for the other Party, (i) to make, have made, use, lease, sell or otherwise dispose of any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at its own discretion, and (ii) to grant to Third Parties non-exclusive licenses (with or without the right to sublicense) to use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However, in the event that consent by each joint owner is required by applicable laws in a certain country for either joint owner to grant to Third Parties non-exclusive licenses to use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the Parties hereby consent to the other Party's grant of one or more licenses under the jointly owned Research Results to Third Parties and shall execute any document or do any other act reasonably requested to evidence such consent.

5.4 Inventions by employees or a Third Party

(직무발명 등의 경우 각 당사자가 IP 권리를 승계 받을 책임 부담)

(a) Where any Third Party such as a contractor is involved in conducting the Research, the Party engaging the Third Party shall ensure that the Third Party assigns to the Party all and any Intellectual Property the Third Party may obtain in conducting the Research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section.

(b) Each Party shall ensure that its own employees involved in conducting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assign to the Party all and any Intellectual Property that the employees may obtain in conducting the Research in order to comply with this section.

6. CONFIDENTIALITY

(비밀유지)

6.1 Definitio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비밀정보의 정의)

The following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s, materials and know-how, shall be considered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 (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with “confidential,” “proprietary” or some similar indication marked;
- (ii) information that is expressly advi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be confidential in a written or tangible form;
- (ii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orally or otherwise than in tangible form provided that it must be identified as “confidential” at the time of disclosure and a written summary must be provided to the receiving Party within twenty (20) days thereafter; or
- (iv) information that would be reasonably constru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receiving Party.

6.2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비밀유지의무 내용)

The receiving Party of the disclosing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obliged:

- (i) to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 (ii) not to disclose for any other purposes any part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including its own Affiliate)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unless expressly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disclosing Party;
- (iii) to limit dissemination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to its employees who are directly involved in the performance of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and
- (iv) to protect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with the same degree of care, but no less than a reasonable standard of care, as it protects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6.3 Exception

(적용 제외 대상)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not include information that

- (i) is already part of the public domain as of the time of its disclosure;
- (ii) is subsequently learned from a Third Party without a duty of confidentiality;
- (iii) was already in the possession of the receiving Party at the time of disclosure;
- (iv) was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receiving Party or its employees without reference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ing Party provides with; or
- (v) is required to be disclosed pursuant to a court order or government authority, whereupon the receiving Party should, at its earliest opportunity, provide a written notice to the disclosing Party prior to such disclosure for the disclosing Party to secure a protective order or take other appropriate action.

6.4 Period

(비밀유지의무 기간)

The terms regarding the duty of confidentiality under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date of disclosure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6.5 Termination of Agreement

(계약 파기, 종료 시 비밀정보의 반환 등)

In the event of termination or expiration of this Agreement, upon written request of the disclos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immediately return all the originals, copies, derivatives and relevant materials of the disclosing Party's Confidential Information, or at the disclosing Party's option destroy any remaining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certify in writing that such destruction has taken place. However, the receiving Party may request a copy of relevant Research documentation when it is needed for audit purposes.

7. PUBLICATIONS

(연구결과 출판)

7.1 Right to Publish

(원칙적으로 연구결과를 자유롭게 출판할 수 있음)

Subject to any applicabl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each Party is free to publish reports or papers of the Research and other activities conducted under this Agreement in accordance with academic standards. Any such reports or papers may refer to the fact that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the Parties under this Agreement.

7.2 Review and Comment

(다른 당사자의 영업비밀 등을 미리 확인 받을 필요. 상대방은 삭제, 지연 요구 가능)

During and after the term of this Agreement, each Party agrees to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a copy of any such reports or papers (excluding student thesis and/or dissertations) of the Research for review and comment at least [*thirty (30) days*] prior to submission for publication. The other Party can then (i) request deletion from the publication of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has been inadvertently included and/or (ii) request an additional [*sixty (60) day*] delay in submission for publication to allow time for filing an application for legal protection on the Research Results in which the other Party has an ownership interest.

8. INDEMNIFICATION

(면책 사항)

8.1 Disclaimers

(제공되는 정보나 결과는 어떠한 보장을 하지 않음)

ANY AND ALL INFORMATION, MATERIALS,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PROPERTY AND RIGHTS GRANTED AND/OR PROVIDED BY EACH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ARE GRANTED AND/OR PROVIDED ON AN “AS IS” BASIS. ANY PARTY MAKES NO WARRANTIES OF ANY KIND, EITHER EXPRESS OR IMPLIED, AS TO ANY MATTER, AND ALL SUCH WARRANTIES, INCLUDING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EXPRESSLY DISCLAIMED. WITHOUT LIMITING THE GENERALITY OF THE FOREGOING, ANY PARTY DOES NOT MAKE ANY WARRANTY OF ANY KIND RELATING TO EXCLUSIVITY, INFORMATIONAL CONTENT, ERROR-FREE OPERATION, RESULTS TO BE OBTAINED FROM USE, FREEDOM FROM PATENT, TRADEMARK AND COPYRIGHT INFRINGEMENT AND/OR FREEDOM FROM THEFT OF TRADE SECRETS. EITHER PARTY IS PROHIBITED FROM MAKING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Y TO ANY THIRD PARTY ON BEHALF OF THE OTHER PARTY RELATING TO ANY MATTER, INCLUDING THE APPLICATION OF OR THE RESULTS TO BE OBTAINED FROM THE INFORMATION, MATERIALS, SERVICES, INTELLECTUAL PROPERTY OR OTHER PROPERTY OR RIGHTS GRANTED AND/OR PROVIDED BY THE OTHER PARTY PURSUANT TO THIS AGREEMENT.

8.2 Limitation of Liability

(상대방의 이익 손실이나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 없음)

EITHER PARTY SHALL NOT BE LIABLE TO THE OTHER PARTY OR ANY THIRD PARTY FOR ANY REASON WHATSOEVER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FOR LOSS OF PROFITS OR FOR INCIDENTAL, INDIRECT, SPECIAL OR CONSEQUENTIAL DAMAGES, EVEN IF THE PARTY HAS BEEN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S OR HAS OR GAINS KNOWLEDGE OF THE EXISTENCE OF SUCH DAMAGES.

8.3 Indemnification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권리나 라이선스에 대한 소송 등에서 라이선스 부여한 자 면책)

Either Party shall defend, indemnify and hold harmless the other Party, including its trustees, officers, employees, attorneys and agents, from and against any and all liability, damage, loss or expense (including reasonable attorneys fees and expenses) incurred by or imposed upon the other Party in connection with any claim, suit, action or demand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any exercise of any right or license granted or provided to the Party under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use of the Research Results, under any theory of liabili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tions in the form of tort, warranty, or strict liability, or violation of any law, and regardless of whether such action has any factual basis.

9. TERM AND TERMINATION

9.1 Term of Agreement

(연구 종료 시까지 유효)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until the completion of the Research specified in Schedules A and B, unless terminated earlier for the reasons set forth hereunder.

9.2 Termination

(해지권 및 해지 사유)

(a) In the following cases of defaults,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if defaults are not remedied within thirty (30) days from a written notice to the other defaulting Par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faulting Party") to remedy the defaults:

- (i) The Defaulting Party delays its obligations pursuant to this Agreement without a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or
- (ii) The Defaulting Party commits other breach of this Agreement.

(b) In the following cases, either Party may immediately terminate this Agreement:

- (i) The other Party becomes insolvent or bankrupt;
- (ii) Petition is filed by or against the other Party under bankruptcy law, corporate reorganization law, debtor rehabilitation law or any other law for relief of debtors and for similar purposes;
- (iii) The other Party assigns all or a substantial part of its business or assets for the benefit of creditors; or
- (iv) The other Party is considered objectively unable to remedy defaults or continue to perform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for any other reasons.

9.3 Effect of Termination

(해지통지 받으면 연구수행 목적으로 전달받은 모든 자료 반환)

Upon arrival of a notice of termination, each Party must return to the other Party immediately all materials, documents, facilities, software and any other IP received from the other Party for the purpo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10. SURVIVAL OF PROVISIONS

(계약 해지, 종료 후에도 효력 유지하는 조항들)

All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Parties set forth herein that expressly or by their nature survive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including:

Intellectual Property (Section 5)

Confidentiality (Section 6)

Publications (Section 7)

Indemnification (Section 8)

Governing Law (Section 14)

Dispute Resolution (Section 15)

General (Section 16)

shall continue in full force and effect subsequent to and notwithstanding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until they are satisfied or by their nature expire, and shall bind the Parties and their legal representatives,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11. NOTICE

(수신 확인 가능한 수단으로 서면 통지)

(a) Any notice to the other Party under this Agreement must be in writing, signed by the Party giving it, and provided either in person, by registered mail, certified mail,

reputable international courier, or any other communication means with confirmation of receipt available to the following address:

(i) to KAI:

Korean ABC Institute
12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138-050
Attention: Mansoo Lee, President
Fax: +82-2-123-4567
Email: mslee@KAI.com

(ii) to AXU:

American XYZ University
456 Main Street
New York City, NY 12345, USA
Attention: Kevin Moore, Vice President
Fax: +1-800-123-4567
Email: moore@AXU.com

(연락처는 수시로 업데이트)

(b) Either Party may update its contact information by providing written notice to the other Party as required by this section.

(업데이트 안 해서 발생한 계약 위반은 책임 없음)

(c) Either Party shall not be liable to any breach of this Agreement caused by the other party's negligence in updating its contact information.

12. FORCE MAJEURE

(불가항력)

12.1 Suspension of Obligations

(불가항력 발생시 의무 이행 정지)

If either Party is unable to perform any of its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ecause of circumstances beyond the reasonable control of the Party, such as floods, fires, accidents, earthquakes, riots, wars, acts of government, epidemic, terror or destruction of production facili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Force Majeure Event"), the Party affected by the Force Majeure Event shall immediately give notice to the other Party and shall do everything reasonably practicable to resume performance. Upon receipt of such notice, all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mmediately suspended and any delays due to the Force Majeure Event are excused for the period of such Force Majeure Event.

12.2 Termination by Long-term Suspension

(장기간 회복 불능시 계약 해지)

If the period of suspension exceeds sixty (60) days from the receipt of notice of the Force Majeure Event, the Party not affected by the Force Majeure Event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by giving a written notice of termination to the other Party.

12.3 Duty of Prevention

(불가항력 이벤트 예방 및 피해 최소화 노력)

The Parties shall make all reasonable effort to prevent such Force Majeure Event or to minimize damage and interruption on performance of the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by implementing disaster recovery plan, business continuity plan or any other prevention system.

13. EXPORT CONTROLS

(기술수출금지 관련 법률 준수 등)

Each Party is subject to any and all applicable export control laws and regulations in its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either Party will not provide or make accessible to the other Party any export-controlled information or materials without first informing the other Party of the export-controlled nature of the information or materials and obtaining from the other Party its written consent to accept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as well as any specific instructions regarding the mechanism pursuant to which such information or materials should be passed. To the extent there is a situation where the transfer of information, data or materials from a Party to the other Party requires an export control license from the pertinent agency of the respective government and/or written assurances by the Party that it shall not export data or commodities to certain foreign countries without prior approval of such agency, the Party understands that the other Party cannot guarantee that such a license will be issued.

14. GOVERNING LAW

(계약서 준거법)

[Option 1] Laws of Korea

(한국법)

The validity,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Republic of Korea*].

[Option 2] Laws of US

(미국법)

The validity,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State of New York*].

[Option 3] Laws of third country (e.g. England)

(제3국법)

The validity, interpret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be governed by an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ngland*].

15. DISPUTE RESOLUTION

(분쟁해결)

15.1 Good-Faith Negotiation

(분쟁 발생 시 협의를 통해 해결)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Agreement shall be attempted to be settled through good-faith negotiation between senior management of both Parties. The Parties agree to discuss their differences in good faith and to attempt to reach an amicable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discussion will be confidential and may not be used in a later evidentiary proceeding.

15.2 Arbitration

(협이나 조정 불가 시 중재. 중재장소는 변경 가능)

(a) In the event that negoti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15.1 does not result in a resolution of the dispute, the Parties shall proceed to binding arbitration to finally settle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1) or three (3)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place of arbitration will be [*London*]. The language of the arbitration shall be English.

(b) The arbitrator's decis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c) All aspects of the arbitration will be confidential. Neither Party may disclose the existence, content or results of the arbitration, except as necessary to comply with legal or regulatory requirements.

(d)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limit the Parties' right to seek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or to enforce an arbitration award in any applicable competent court of law.

16. GENERAL

16.1 Headings

(조항 제목은 법적 효력 없음)

The headings used in this Agreement are for the convenience of the Parties only and are not intended to be a part of this Agreement or to affect the meaning or interpretation of this Agreement.

16.2 Non-Assignment

(계약양도 금지)

The Agreement shall be binding on the Parties hereto. Neither Party may assign the Agreemen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y. Any assignment by operation of law, order of any court, or pursuant to any plan of merger, consolidation or liquidation, shall be deemed an assignment for which prior consent is required and any assignment made without such consent shall be void and of no effect as between the Parties.

16.3 Non-Amendment

(계약 체결 후 변경 금지)

No amendment or change to the Agreement shall be valid unless in writing and signed by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16.4 Non-Waiver

(권리 불행사가 의무 면제 아님)

A delay or omission by either Party to exercise any right or power under the Agreement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a waiver thereof. A waiver by either of the Parties of any of the covenants to be performed by the other Party or any breach thereof shall not be construed to be a waiver of any succeeding breach thereof or of any other covenant in this Agreement.

16.5 Entire Agreement

(이전 합의 등은 이 계약서로 대체)

This Agreement, including any appendices, schedules, exhibits, referred to therein and attached thereto, constitutes the entir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in this Agreement and supersedes all prior agreements, whether written or oral, with respect to such subject matter.

16.6 Severability

(일부 무효 조항 외의 조항은 유효)

In the event that any provision of the Agreement conflicts with the law under which the Agreement is to be construed or if any such provision is held invalid by a competent authority, such provision shall be deemed to reflect as nearly as possible the original intention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 The remainder of the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16.7 Counterparts

(부분)

This Agreement may be executed in one or more counterparts, and each of which shall be deemed to be an original, and all of which shall constitute one and the same instrument.

Accepted and agreed by the following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s of the Effective Date:

KAI

AXU

Date:

Date:

Name:

Name:

Title:

Title:

Signature _____
:

Signature: _____

Schedule A (Scope of Research)

Schedule B (Roles and Responsibilities)

Schedule C (Financial Contribution or Payment Plan)

V. 비밀유지 계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

THIS IS A SAMPLE COPY OF MUTUAL NON-DISCLOSURE AGREEMENT BETWEEN KOREAN ENTITY(IES) AND US ENTITY(IES), WHICH NEEDS TO BE MODIFIED APPROPRIATELY AS AGREED BY THEM.

This NON-DISCLOSURE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and made effective as of the last date on which an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the Parties signs below (“Effective Date”) by and between

[Korean ABC Institute]

123 Yeoksam-dong Gangnam-gu
Seoul, Republic of Korea, 138-050
(hereinafter referred to as “KAI”)

and

[American XYZ University]

456 Main Street
New York City, NY 12345, USA
(hereinafter referred to as “AXU”).

KAI and AXU will be hereinafter referred to individually as a “Party” and collectively as the “Parties.”

1. CONFIDENTIAL INFORMATION

The following inform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cuments, materials and know-how, shall be considered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is Agreement:

- (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with “confidential,” “proprietary” or some similar indication marked;
- (ii) information that is expressly advi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be confidential in a written or tangible form;
- (iii)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orally or otherwise than in tangible form provided that it must be identified as “confidential” at the time of disclosure and a written summary must be provided to the receiving Party within twenty (20) days thereafter; or
- (iv) information that would be reasonably construed to be confidential information under the circumstances by the receiving Party.

2. TERM

This Agreement shall apply to Confidential Information that is disclosed for a period of [one (1) year] from the Effective Date, unless terminated earlier by the Parties.

3. PERIOD OF CONFIDENTIALITY

The obligations and duties under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for a period of [five (5)] years from the receipt of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by the receiving Party. The receiving Party’s aforementioned obligations and duties shall surviv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4. OBLIGATIONS AND DUTIES OF CONFIDENTIALITY

The receiving Party, who is provided with Confidential Information from the disclosing Party, shall be obliged:

- (i) to use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only for the purpose of evaluating and engaging in an actual or potential mutually agreeable or negotiable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rpose”);
- (ii) not to disclose for any other purposes any part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the third party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its own affiliate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Purpose under this Agreement, unless expressly authorized in writing by the disclosing Party;

- (iii) to limit dissemination of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to only its employees who are required to have the Confidential Information for the Purpose under this Agreement; and
- (iv) not to reverse engineer, disassemble or decompile or otherwise attempt to decipher the design or function of any prototypes, software or other tangible objects which embody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5. MAINTENANCE OF CONFIDENTIALITY

The receiving Party shall take at least those measures that it takes to protect its own confidential information of a similar nature, but shall exercise no less than a reasonable degree of care. Furthermore the receiving Party shall ensure that its employees and contractors who have access to Confidential Information of the disclosing Party have duties of confidentiality substantially the same as or similar to the provisions hereof, prior to any disclosure of Confidential Information to such employees and contractors.

6. EXCEPTIONS

The Agreement shall not apply to information that:

- (i) was already in the receiving Party's possession before disclosure by the disclosing Party;
- (ii) is or becomes a matter of public knowledge through no fault of the receiving Party;
- (iii) is rightfully received by the receiving Party from a third party without a duty of confidentiality to the disclosing Party;
- (iv) is disclosed by the disclosing Party to a third Party without a duty of confidentiality;
- (v) is independently developed by the receiving Party without reference to any information the disclosing Party provides with;
- (vi) is legally required (by a court order, oral questions, interrogatories, requests for information, subpoena, civil investigative demand or similar process) to disclose, provided the receiving Party gives a prior written notice to the disclosing Party and cooperates with the disclosing Party in obtaining appropriate protection of such information; or
- (vii) is disclosed by the receiving Party with the disclosing Party's prior written approval.

7. LIMITATION OF AGREEMENT

(a) No right or license is granted or conveyed under this Agreement by the disclosing Party to the receiving Party under any recognized intellectual or industrial property righ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any copyright, patent, mask work right, trade secret, or trademark owned by or licensed to the disclosing Party.

(b) Nothing in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as creating a relationship of representatives, partners, agents or joint ventures between the Parties for any purpose whatsoever. Neither Party shall have the authority or power to bind the other Party or to contract in the name of or create a liability against the other Party in any way or for any purpose.

8. RETURN OF CONFIDENTIAL INFORMATION

Confidential Information, and all copies thereof, remain as the property of the disclosing Party. Upon the written request of the disclosing Party, the receiving Party shall promptly return to the disclosing Party all documents, presentations, and other tangible items of Confidential Information furnished by the disclosing Party and all copies thereof, or at the request of the disclosing Party, certify in writing that all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including all copies, has been destroyed.

9. GENERAL

(a) Each Party shall adhere to all applicable laws, regulations and rules relating to the export of technical data, and shall not export or re-export any technical data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disclosing Party.

(b) All additions or modifications to this Agreement must be made in writing and must be signed by a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 of each Party.

(c) All Confidential Information shall be provided “AS IS” and without any warranty, express, implied or otherwise, regarding its accuracy, completeness or performance.

(d) Any failure to enforce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will not constitute a waiver thereof or of any other provision of this Agreement.

(e) This Agreement shall be construed in accordance with the laws of [*England*], without giving effect to principles of conflict of laws.

(f) All disputes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one (1) or three (3) arbitrators appointed in accordance with the said Rules. The arbitration hearing shall take place in [London] and be held in English. Notwithstanding the foregoing, each Party may immediately bring a proceeding seeking preliminary injunctive relief in a court having jurisdiction thereof which shall remain in effect until a final award is made in the arbitration.

(g)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with respect to Confidential Information disclosed hereunder and supersedes all prior or contemporaneous oral or written agreements concerning such Confidential Information.

Accepted and agreed by the following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Parties as of the Effective Date:

KAI

AXU

Date:

Date:

Name:

Name:

Title:

Title:

Signature: _____

Signature: _____

VI. 국제공동연구 관련 용어 해설서

1.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식재산기본법 제3조)

세계지식재산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 정의하고 있는 ‘지식재산’이란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이미지, 심벌, 디자인, 문학·예술 작품, 발명 등을 포함하는 창작물 (creations of the mind, such as inventions; literary and artistic works; designs; and symbols, names and images used in commerce)”이라고 정의된다.

참고로, 우리나라 지식재산기본법에서는 “신지식재산”을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으로, “지식재산권”을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고 하여, ‘지식재산’과 구분하고 있다.

2. 발명(Invention)

우리나라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이에 반해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고(실용신안법 제2조), ‘디자인’은 물품[물품의 부분(제42조는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美感)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디자인보호법 제2조).

이에 반해, 미국의 경우 ‘발명’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으며, 대신 미국 특허법에서는⁵⁾ “새롭고 유용한 방법, 기계, 제조물 또는 합성물, 또는 이들의 새롭고 유용한 개량을 발명하거나 발견한 자는 누구든지 본 법률의 조건과 요건에 따라 그에 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어떤 발명이 라도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질적인 의미에서 자연법칙이나 물리적 현상 및 추상적 아이디어는 특허를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와 동일하다.

5) 35 U.S.C. §101 (미국 특허법 제101조)

3. 특허(Patent)

‘특허’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모두를 아우르는 제도라는 의미로 포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좁은 의미에서 ‘특허’ 또는 ‘특허 발명’이란 특허를 받은 발명을 말한다(특허법 제2조).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는 특허법에서, 실용신안은 실용신안법에서, 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에서, 상표법 상표법에서 각각 규정하는 개별 입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모두를 연방 특허법에서 함께 규정하고 있으며, 상표법만 별도로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는 엄격한 의미에서 실용신안 등 다른 산업재산권과 구분되어 사용되지만, 미국의 경우 'Patent'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모두 포섭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특허와 실용신안은 ‘Utility Patent’로, 디자인은 ‘Design Patent’로 구분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4. 노하우 (Know-how)

‘노하우’란 일반적으로 ‘기술적 비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출원·등록 절차를 통해 권리가 확보되는 특허(권)와 대비하여 발명자가 비밀로 유지하고 있는 기술적 정보를 통칭하는 경우가 많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비밀’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공개된 기술 정보라 하더라도 ‘노하우’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노하우’와 ‘영업비밀’이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하우’에 대한 법률상 정의는 없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기술’을 정의하면서,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를 포함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도 ‘노하우’에 관하여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5. 영업비밀 (Trade Secret)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미국 통일영업비밀보호법(Uniform Trade Secret Act)에서는 ‘영업비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식(formula), 패턴(pattern), 편집물(compilation), 프로그램, 물건(device), 방법(method), 기법(technique) 또는 공정(process)을 포함하는 다음과 같은 정보(information)를 의미한다.

1. 개시 또는 사용에 의해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정당한 수단에 의해서는 쉽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잠재적으로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을 것
2. 비밀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 노력의 대상일 것

6. 연구성과 (Research Results/Outcomes)

우리나라에서 ‘연구성과’란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erformance, such as patents and theses, which are generated through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other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erformance which is tangible or intangible)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7. 실시 (working/use)

우리나라에서 특허발명의 ‘실시’란 다음 행위를 말한다(특허법 제2조).

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 그 물건을 생산·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다.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 나목의 행위 외에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

이에 반해, 미국 특허법은 ‘실시’에 대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특허법 제271조6)에서 특허권의 침해와 관련하여 특허발명을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제조, 사용, 판매 청약, 판매 또는 미국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

8. 발명자 (Inventor)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에 한해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특허법 제33조). 이에 관해 대법원은⁷⁾ “발명자(공동발명자를 포함한다)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발명에 대한 기본적인 과제와 아이디어만을 제공하였거나 연구자를 일반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의 지시로 데이터의 정리와 실험만을 한 경우 또는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여 발명의 완성을 후원·위탁하였을 뿐인 정도 등에 그치지 않고, 발명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착상을 새롭게 제시·부가·보완하거나, 실험 등을 통하여 새로운 착상을 구체화하거나, 발명의 목적 및 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과 방법의 제공 또는 구체적인 조언·지도를 통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경우 등과 같이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이른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하는 화학발명의 경우에는 당해 발명 내용과 기술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예측가능성 내지 실현가능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실험데이터가 제시된 실험예가 없으면 완성된 발명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험을 통하여 발명을 구체화하고 완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는지의 관점에서 발명자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 특허 출원은 ‘발명자(Inventor)’만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출원인(applicant)’와 ‘발명자(inventor)’가 항상 동일했다. 여기에서 발명자란 발명의 주체(SUBJECT MATTER), 즉 특허 출원된 발명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의 주된 기술적 내용을 발명 또는 발견한 자를 말한다⁸⁾. 2011년 개정된 특허법(American Inventor's Act. 'AIA'라고 함)을 통해 Assignee, 즉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한 자도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 특허법⁹⁾에 의하면 발명자

6) 35 U.S.C. §271 :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in this title, whoever without authority makes, uses, offers to sell, or sells any patented invention, within the United States or imports into the United States any patented invention during the term of the patent therefor, infringes the patent.

7)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 판결

8) 35 U.S.C. §100 : The term “inventor” means the individual or, if a joint invention, the individuals collectively who invented or discovered the subject matter of the invention.

9) 35 U.S.C. §118

이외에 (1) 발명자로부터 발명을 양도받거나 양도 받기로 한 자, (2) 그 발명에 대한 충분한 재산적 이익을 가진 자도 특허 출원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9. 공동연구 (Joint Research Agreement)

‘공동연구’의 일반적인 정의는 “복수의 연구개발 주체가 동일한 연구과제의 수행에 소요되는 연구개발 자금, 인력, 시설, 기자재, 정보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추진하는 연구개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¹⁰⁾.

미국 특허법에서는¹¹⁾ ‘공동연구계약’이란 2인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특허 출원된 발명이 속하는 분야의 실험, 개발 또는 연구를 위해 서면에 의한 계약, 허락, 또는 협력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공동연구’ 또는 ‘공동연구계약’에 대하여 특허법에 정의 규정은 없으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협동연구개발촉진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서 ‘국제공동연구(사업)’에 관해 언급하고 있다.

10. 기타 용어¹²⁾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체분쟁해결 [법일반])

사법적 구제수단인 소송 이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화해, 조정, 중재제도가 있음

all elements rule

(구성요소일체의 원칙 [특허])

특허침해여부를 판단할 때,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모든 구성요소가 침해품(an accused product)에 존재하는지(reads on)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를 구성요소일체의 원칙이라고 함

10) 윤종민,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 개선방안’, 기술혁신학회지, 제12권3호, 2009. 9. 502면

11) 35 U.S.C. §100 : The term “joint research agreement” means a written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entered into by 2 or more persons or entities for the performance of experimental, developmental, or research work in the field of the claimed invention.

12) 국제공동연구 계약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지식재산용어사전(특허청, 2008년)에서 선별·발췌함

applicable law

(준거법 [법일반])

당사자, 법률행위, 목적에 대하여 적용되는 본국법, 주소지법을 준거법이라고 함. 이러한 준거법에 의하여 특정한 당사자의 능력, 그의 법률행위, 그의 법률행위의 목적의 법률효과가 정해짐. 국가간에 있어 준거법을 정하는 방법은涉外사법에 의함

arbitration

(중재 [법일반])

분쟁해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합의로써 해결하는 제도로서, 중재인이 판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가짐. 특허권자 등은 침해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원만한 해결로서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Bayh-Dole Act

(바이-돌 법 [법일반])

바이-돌 법은 연방정부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발명에 대해 상업화와 공적 이용성을 장려하기 위해 1980년 입법되었음. 동 법에 의해 대학, 소기업, 비영리단체가 그들의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정부의 지배를 받는 민간부문에 라이선스를 허여할 수 있게 되었음

best mode

(최적의 방식(형태) [특허])

미국 특허법 제112조의 첫 번째 단락에 기재되어 있는 명세서 기재요건 중의 하나. 발명가가 특허청구한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최적의 방식을 명세서에 기재해야 하는 유효한 특허허여를 위한 요건. 발명가는 공개의 대가로 독점배타권을 인정받으므로 특허출원시 최적의 실시형태를 일반대중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조건

blanket license

(blanket license [저작권])

미국 공연저작권협회에서 부여하는 라이선스에서 유래. 이에 의하면, 방송국 등 공연자에 대해 일정액 혹은 일정률의 로열티를 받고, 협회가 보유하는 레퍼토리 내의 어떤 노래라도 공연할 수 있게 되었음

blocking patents

(상호저촉특허 [특허])

소유자는 다르면서 권리범위에서 서로 중복되거나 결합되는 특허. 실제 실시하기 위해서는 각 특허에 대한 라이선스가 각각 필요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허간의 크로스 라이선싱이나 특허풀에 기탁해 두는 것이 필요함

breach of contract

(계약위반 [법일반])

계약에서 정한 사항 즉, 작위 내지 부작위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를 계약위반이라 하며, 계약의 해지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근거가 됨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법일반])

소송 등 분쟁해결 절차에서 각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사실이 진실하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할 책임.

CAFC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 [지재권일반])

특허사건에 관한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한 항소법원으로서, 종래의 미국 관세특허항소법원(the court of customs and patent appeals, CCPA)과 미국 배상청구법원(the court of claims)이 1982년 연방법원 개선법에 따라 통합되어 특허법원 해석, 적용의 통일성을 기하고 각 지역별 항소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됨

circumvent invention

(우회발명 [특허])

기존의 등록된 특허와 유사한 발명으로서 특허권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발명의 구성요건에 추가요소를 포함시키는 등 회피 설계한 발명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민·형사상의 책임 [법일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으로 민사상으로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신용회복 등의 책임이 있으며, 형사상으로는 징역, 벌금형이 과해짐

claim of priority

(우선권주장 [지재권 일반])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서 선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발명(고안)과 동일한 내용을 출원(후출원)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면, 신규성, 진보성, 선후원관계 등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출원일의 출원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 Paris 조약에 근거한 우선권 주장과 국내우선권 주장이 있음

contributory infringement

(기여침해 [지재권 일반])

특허권침해를 고의로 돕는 행위. 미국 특허법 제271조 제(c)항에 의하면 특허발명의 부품 또는 특허된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재료나 장치에 있어서 특허발명의 주요부분을 구성하는 것에 대하여 특허침해가 되는 것. 또는 다른 용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부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기여침해가 되어 특허권침해와 마찬가지로 취급됨

co-ownership

(공유 [법 일반])

2인 이상이 하나의 권리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 물건을 지분의 형태로 소유하는 것. 공유관계는 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 법률행위에 의하여 성립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수인이 공동으로 한 개의 물건을 양수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임

derivative work

(2차적 저작물 [저작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저작권법 제5조). 즉, 기존의 저작물을 토대로 이것에 새로운 창작성이 가하여져 새로운 저작물이 작성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 기존의 저작물(원저작물)과는 별도로 보호됨

disclosure

(공표/개시 [지재권일반])

발명의 내용을 공중에게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명세서뿐만 아니라 도면, 청구범위를 포함한 모든 증거물건에 나타나 있는 발명의 기술을 말함(특허). 수단을 불문하고 공중이 저작물을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저작권)

discovery

(1) 발견 [특허]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냄.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없음

(2) 증거개시절차 [법일반]

미국 소송절차에 있어서 양 당사자간에 요구하는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강제 개시 절차. 통상 심문, 자인요구, 서류제출요구, 증거서류제출, 녹취 등을 활용한다

doctrine of equivalents

(균등론 [특허])

특허청구범위를 해석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를 정함에 있어 단순히 문언에 의한 문리해석의 범위를 넘어서 문언상의 기재와 균등 내지 등가의 발명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한다고 보는 이론

duty of disclosure

(개시의무 [특허])

미국 형평법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으로, 출원인은 특허상표청에 독점권을 주장하고 요구하는데 있어서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관련된 사실을 평가할 기회를 특허상표청에 부여하여야 하며, 출원인은 자기의 기술에 대해서 심사관보다 전문가이므로 모든 관련 사실을 충분하고 정확하게 심사관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고 있음

element

(구성요소 [특허])

청구범위를 한정하는 기술적 특성을 정의하는 청구항의 개별요소. 발명을 구성하는 요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정한 기능을 갖는 개개의 구체적인 수단 또는 공정을 의미함

employee invention

(직무발명 [지재권일반])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특허법에 규정했던 사항들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발명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equitable estoppel

(형평법상 금반언 [특허])

미국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형평법상 방어논리의 하나.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합리적인 암시를 주었고, 이에 침해자가 그러한 특허권자의 행위를 믿었으며, 특허권자의 침해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침해자가 큰 손해를 입게 될 경우 특허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

estoppel

(금반언의 원칙 [지재권일반])

당사자의 일방이 과거에 일정한 방향의 태도를 취하여 상대방이 이를 신뢰하고 자기의 소송상의 지위를 구축하였는데, 이후 신뢰를 저버리고 종전의 태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 나오는 경우에 후행의 거동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file wrapper estoppel

(출원포대금반언 [지재권일반])

출원인이 클레임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에 작용하는 금반언의 원칙. 즉, 출원인이 심사관의 거절이유를 회피하기 위하여 선행기술과의 관계에서 보정에 의하여 클레임을 실질적으로 감축한 경우, 특허 받은 후에 이미 감축한 부분에 대하여 특허권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good faith

(선의 [법일반])

선의란 정직하고 사기를 범하지 아니하는 것 또는 타인을 해하는 위법한 행위에 관하여 참가 또는 공모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법률 일반적인 용어로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과실 없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의미함

grant back

(그랜트 백 [법일반])

특허의 라이선스계약에서 라이선스된 특허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실시권자가 개발한 개량발명의 특허를 실시허락자가 실시권자에게 양도 또는 실시허락을 요구하는 것

joint inventor(유사어 : co-inventor)

(공동발명자 [특허])

복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발명을 한 경우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자 전원이 공유하며,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함.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발명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동일하며, 따라서 공동발명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술사상의 구체적 사상 또는 완성에 직접 관여한 실질적 협력자이어야 함

jurisdiction

(관할권 [법일반])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간에 본래 국가에 귀속되어 있는 재판권을 어떻게 분할하여 행사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관할이라 하며, 정하여진 관할에 따라 재판을 하는 권한을 관할권이라고 함

laches

(해태 [지재권])

특허침해소송에서 피소자의 형평법상 방어논리 중 하나. 지식재산권자가 침해자에 대한 소송 제기를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지연시켜 해당 침해자에게 불이익을 유발시킬 때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침해의 주장에 대한 방어논리로서, 권리 주장 불가를 주장할 수 있음

lapse

(실효 [법일반])

하자 없이 성립되거나 유효한 법률행위가 이후 일정한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것

license

(실시권 [지재권일반])

특허권자가 타인에게 자신의 특허의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 전용 실시권과 통상실시권이 있음. 저작권법에서는 이용허락, 특허법에서는 실시허락이라는 용어가 사용됨

literal infringement

(문언적 침해 [특허])

특허를 침해하는 물건이 특허청구범위의 문언에 의하여 특정된 특허발명의 구성요건을 모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말함. 동일영역에서의 침해가 성립되려면 특허의 구성요건을 전부 이용하여야 함. 특허청구항의 구성요소 중 하나라도 결여된 경우에는 문언적 침해는 성립하지 아니하며, 균등영역에서의 침해를 검토하게 됨

Markman hearing

(마크맨 히어링 [지재권일반])

미국법원이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특허 클레임의 해석을 확정하는 절차로서, 특허소송에 있어서 확실성과 통일성 확보를 위해 본 절차를 거치고 있음

misappropriation

(부정유포행위 [법일반])

타인의 재물을 불법횡령, 부정 유포하는 행위. 특히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한 수단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한 행위 내지 부정취득된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자가 영업비밀을 개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non-obviousness

(비자명성 [특허])

출원된 발명이 특허 받을 수 있기 위한 요건 중의 하나로서, 발명의 창작수준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공지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을 정도로 창작성이 있을 것을 말함. 진보성의 다른 말로 발명의 비자명성, 발명의 비용이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함

novelty

(신규성 [특허])

특허등록요건 중의 하나로 종래의 기술과 구별되는 신규한 사항이 있어야 함.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발명은 신규성을 상실함

offer

(청약 [법일반])

계약 성립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청약. 낙성계약의 경우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함. 원칙적으로 승낙이 있을 때까지 철회할 수 있으며, 청약이 거절되거나 신청에 정함이 있는 경우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효력을 잃음

package licensing

(포괄라이센싱 [특허])

복수의 특허를 그룹으로 실시권을 허락하는 것. 실시권자는 허락된 모든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됨

parol evidence rule

(구두증거배제 법칙 [법일반])

당사자가 서면에 의하여 계약을 하고, 그 중에 정하여진 바가 당사자간의 계약상 권리의무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내기로 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의 내용과 다른 당사자간의 교섭, 양해, 합의 등이 계약서 작성 전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penal damages

(징벌적 배상 [법일반])

민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反) 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하게 하는 것

power of attorney

(위임장 [법일반])

특정인에게 특정 사항을 위임할 것을 기재한 문서로, 일반적으로 대리권수여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 그 증거로 이용됨. 그러나 대리권수여의 원인행위인 위임과 대리권을 수여하는 수권행위는 이론상 별개이므로 위임장의 존재 여부나 그 기재내용이 반드시 대리의 실질적 법률관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principle of territoriality

(속지주의 [지재권일반])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부여한 국가의 영토 내에서만 지식재산권의 효력이 미친다는 원칙

prior art

(선행기술 [특허])

당해 출원의 출원일보다 앞서 '서면'에 의한 개시를 통하여 공개된 기술

public domain

(공중영역 [지재권일반])

지식재산권의 형태로 보호받지 못하는 발명, 상업 표장 등 제반 창작물의 지위나 상태. 공중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결정된 창작물 등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자유롭게 복제할 수가 있게 됨

reasonable royalty

(합리적 로열티 [특허])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는 액. 특허권자는 침해자에게 실시료 상당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특허법 제128조 제3항). 이는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해 배상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손해액의 의미가 있음

reverse engineering

(역분석 [특허])

제품을 분해하여 해석평가함으로서 그 구조, 재질, 성분, 제법 등 그 제품에 화
체되어 있는 정보를 추출하는 행위

running royalty

(경상기술료 [지재권일반])

라이센스된 기술에 대한 이용료(로열티)를 지불하는 방식 중의 하나로 일정한
비율과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지불하는 방법

settlement

(화해 [지재권일반])

다툼이 있는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여 그 다툼을 끝내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을
의미. 화해로 인해 이전의 계약은 효력을 잃게 되고 당사자들은 화해로 인해 변
경된 새로운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함

shrink-wrap license

(쉬링크랩 라이선스 [지재권일반])

CD롬 등으로 제작·포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우, CD가 들어있는
봉투의 겉면에 계약조건이 인쇄되어 있거나 또는 동봉되어 있는데 이러한 비닐
(wrap)의 개봉으로 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낙으로 간주되는 라이선스계약을 말함

statutory damages

(법정손해배상 [지재권일반])

법정손해배상이란 실손해 배상의 원칙 하에 배상액의 상한과 하한을 미리 법으로
정하는 미국법상의 제도. 2007년 한미 FTA 협정 타결로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sublicense

(재실시/재실시권 [법일반])

실시권자가 부여된 실시권의 범위내에서 다시 제3자에게 부여하는 실시권

summary judgment

(약식판결 [법일반])

미국의 민사소송절차로 증거제시절차의 결과, 중요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의 다툼이 없어 법률문제만으로 종결되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판결하는 것(미국)

transfer of technology

(기술 이전 [지재산권일반])

특허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 기술정보 등이 양도, 실시권 허여, 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함(기술이전촉진법 제2조 제1호)

TTOs (Technology Transfer Offices)

(기술이전사무소 [특혜])

미국대학들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그에 수반하는 장애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대학부설기관으로 이를 설치하고 있음

U.S.C.A. (U.S. Court of Appeals)

(연방항소법원 [법일반])

연방의 제2심 법원. 전국을 13개 순회구로 구분하여 각 구에 한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과 여러 개의 연방항소법원이 설치되어 있음. 각 법원은 그 순회구 내의 연방지방법원 및 여러 종류의 특별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소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음

unfair competition

(부정경쟁 [지재산권일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부정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무단으로 타인의 연구노력 성과를 도용, 타인의 신용에의 무단편승, 허위과장광고 또는 경쟁상대방에 대한 비방행위를 통해 정당한 경쟁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

warranty

(보증 [법일반])

계약에서 용역, 기술, 제품 공급자가 하자에 대하여 보증하는 것. 경우에 따라서 명시적으로 부정할 수 있음. 저작물의 사용계약에서 저작자가 사용자에게 계약의 대상이 된 저작물이 독창적인 저작물이며, 계약에 표시된 사람 이외에는 저작자임을 주장할 수 없고 양도 또는 이용 허락된 권리를 방해하는 권리가 계약으로 다른 사람에게 부여되지 않았음을 통상 문서로 하는 보증을 말함

VII. 국제공동연구 계약 체크리스트

조항	내용요약	검토사항
당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 - 설립준거법 - 주소 - 설립형태(개인, 법인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칭과 주소는 당사자를 특정하는 요소이므로 정식 명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고, 주소도 등기부에 따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함
전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설명 - 계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자 특정 및 계약의 해석 시 참조를 위해 당사자 설명과 계약 목적을 간단히 기재하도록 함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 본문에서 특별한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는 가능하면 모두 정의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정의를 소홀히 하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인 정의가 필요함
연구 구체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범위 2) 역할과 책임 3) 허가 및 허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의 범위, 각 당사자의 맡은 역할과 책임 사항은 계약서 본문에 일일이 적을 수 없으므로, 별지를 사용하여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한 후 계약서 본문에 별첨으로 추가하도록 함 -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은 계약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므로,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누가, 언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등) 기재하여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음
연구 관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반 구조 2) 운영위원회 3) 의사정족수 4) 의결 규칙 5) 상부 회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당사자별로 연구책임자를 두어 각자 맡은 역할을 관리하도록 함 - 당사자가 다수인 경우 가능하면 운영위원회와 같은 프로젝트 관리기구를 두어 전체 연구를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에 운영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데, 계약서 본문에서 일일이 정할 수는 없으므로 계약서 본문에서는 일반적인 사항(구성원, 의사정족수, 의결 규칙 등)만 간단히 기재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함

<p style="text-align: center;">연구비</p>	<p>1) 연구비 부담 2) 연구비 지원 3) 지연손해금 4) 면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연구비는 각자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연구비를 지원 받는 경우 금액, 지급시기, 예상결과물, 보고서 제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별지로 작성하도록 함 - 연구비를 지원 받는 경우 연구비 지급이 적시에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연손해금과 같은 벌칙을 부과하는 것도 바람직함
<p style="text-align: center;">지식재산</p>	<p>1) IP 소유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IP - 단독 개발된 연구결과 - 공동 개발된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유 IP는 각자 소유하고 공동연구의 영향을 받지 않음 - 단독 개발된 연구결과는 개발 당사자 단독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협의에 따라 공동 소유하는 경우도 있음 - 공동 개발된 연구결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지분을 균등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건별로 지분을 협의하여 정하는 경우도 있음
	<p>2) IP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IP - 단독 개발된 연구결과 - 공동 개발된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유 IP의 보호는 각자 책임임 - 단독 개발된 연구결과는 단독 소유의 경우 소유자 책임이며 비용도 소유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특정 국가에서의 출원을 포기할 경우 다른 당사자가 비용 부담 조건으로 출원 허용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 공동 개발된 연구결과는 지분에 따라 비용 분담하여 공동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일부 공유자가 특정 국가에서 출원을 포기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들끼리 비용 분담하여 출원하고 권리를 공유하는 것도 고려 가능함
	<p>3) IP 사용 및 라이선스 부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 IP - 단독 개발된 연구결과 - 공동 개발된 연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보유 IP는 연구개발 및 결과물 사용 목적으로 사용을 허락해야 공동연구의 의미가 있음. 연구와 관련한 사용은 무상, 비독점적, 비양도, 재실시 불가가 일반적이며, 상업적 사용의 경우 별도의 계약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단독 개발된 연구결과를 단독 소유하는 경우 공동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른 공유자에게 무상, 비독점적, 비양도, 재실시 불가의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것이 일반적임.

		<p>다만 상업적 사용 시 별도의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개발된 연구결과는 다른 공유자 동의나 보상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임. 다만, 한국의 경우 공유자 동의 있어야 제3자에게 실시 허락하거나 지분 양도 가능하므로, 동의 요구 시 반대하지 않기로 하고 필요한 서류도 교부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하되, 다른 공유자의 경쟁사에 라이선스 주거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을 제한하도록 협의할 수도 있음
	<p>4) 종업원이나 제3자에 의한 발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 발명 승계 - 종업원 발명 승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모든 발명의 권리는 종업원이 원시적으로 소유하므로, 공동연구계약에 따라 소유 및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종업원로부터 모든 권리를 승계받아야 함 - 승계 의무를 각 당사자에게 부과하여 연구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비밀유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비밀정보 정의 2) 비밀유지의무 3) 예외 4) 기간 5) 계약 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 동안 주고 받는 주요 정보나 자료는 비밀정보로 정의하고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비밀유지기간은 기술의 발전 속도 등에 따라 3~10년 정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이 어느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해지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를 반환하게 하고 모든 사본을 폐기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출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출판권 2) 검토 및 조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나 연구소는 공동연구의 결과물에 관하여 논문이나 보고서로 공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출판을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 공동연구의 특성 상 상대방의 비밀정보나 특허 출원 전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통 출판 전에 상대방에게 미리 살펴보도록 하고, 비밀정보의 삭제가 특허 출원 시까지 일시 보류를 허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면책	1) 연구결과에 대한 면책 2) 계약 관련 손해 면책 3) 제3자 손해 면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결과를 보장하기는 어려우므로 연구결과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서로 부담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 - 계약의 이행, 불이행, 그 밖에 계약에 참여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이익 감소, 이미지 손상, 인력 유출 등)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어떠한 보장을 할 수 없음 - 연구결과나 기존 보유 IP의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제3자와 직접 관련된 당사자 외에는 책임이 없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음
기간 및 해지	1) 계약기간 2) 해지 3) 해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기간은 연구기간과 동일하게 정함 - 계약이 중간에 해지될 수 있도록 해지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해지 절차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해지가 되는 경우 그 때까지 진행된 연구결과물에 대한 권리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일부가 탈퇴하는 경우 기존 연구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기존 보유 IP의 사용을 계속 허락하도록 미리 명시하여야 함
존속 규정	- 계약 종료 후 존속 규정	-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되더라도 손해배상, 지식재산권 귀속 및 사용, 분쟁해결 등은 계속 효력을 유지해야 함
통지	- 통지 주소 - 연락처 정보 업데이트	- 국제공동연구는 거리, 시간상 제약이 있으므로 통지의 방법, 절차, 횟수 등을 가능한 한 유연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불가항력	1) 의무 정지 2) 장기간 정지에 의한 해지 3) 예방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재지변, 전쟁, 전염병 등 어느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이행의무를 잠정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이 일반적임 - 너무 오래 중단되면 안 되므로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도 재개될 가능성이 적다면 계약을 해지하거나 탈퇴를 허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수출 제한	- 국가 통제 기술 제공 제한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중요 기술이 국외로 유출되는 것에 민감하므로 그러한 기술이 공동연구대상이 되거나 연구에 필요한 기술이 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함

준거법	- 계약 적용 기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 적용,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이므로 일방 당사자 국가의 법보다는 제3국의 법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 영미법이 많이 선택되나, 대륙법계 국가의 법(독일, 프랑스 등)으로 정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분쟁해결	1) 협상 2) 중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고위경영진끼리 호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협상으로 해결이 안 되면 소송과 중재를 둘 다 할 수는 없고 반드시 하나만 선택하여야 함 - 소송은 특정 국가의 절차법에 따라 그 나라 법원에서 그 나라 언어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대방에게 매우 불리하여 국제공동연구계약에서는 선택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 중재는 세계 공통의 규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각국의 중재원에서 진행하더라도 각 당사자가 자신의 국가 대리인을 선임하여 영어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공정하며, 1심제이므로 비용도 경제적인 편임 - 중재지는 제3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럽은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아시아는 싱가포르와 홍콩이 주로 선택됨
일반	1) 제목 2) 양도금지 3) 개정금지 4) 권리불포기 5) 완전합의 6) 일부 무효 7) 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은 계약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주요 용어는 미리 정의를 해야 함 - 계약의 권리의무는 양도 불가능하다고 합의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계약서 내용의 변경은 모든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만 허용됨 - 어떤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님을 의례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임 - 이전에 구두나 서면으로 합의된 내용이 있으면 본 계약으로 모두 대체되도록 하여야 계약 내용이 2중으로 합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음 - 계약 중 일부 내용이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는 유효하게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통상적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분이 여러 개라 하더라도 모두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동일한 계약서라고 의례적으로 기재함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일 - 성명 - 직책 - 서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명일이 계약 효력발생일인 경우가 많으나, 국제공동연구계약은 서명을 각자 다른 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력발생일을 언제로 할지 명확하게 정해야 함 - 서명하는 자는 각 당사자를 대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하므로 그러한 권한이 있는 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별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범위 2) 역할과 책임 3) 연구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범위, 기간,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첨으로 추가하여야 함 - 각 당사자가 맡은 역할, 책임사항, 준수할 일정, 제출할 결과물이나 보고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 - 연구비를 지원받는 경우 금액, 지급일, 지급 방법, 환율 계산, 미지급 시 벌칙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해야 함